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

2차 국익과 인권의 조화

일시 2022. 9. 15.(목) 14시 ~ 16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주관 | 조정훈 의원실 법무부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공동주최 | 기동민 의원실, 김형동 의원실, 류호정 의원실, 유상범 의원실, 윤재갑 의원실, 이명수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

2차 국익과 인권의 조화

일시 2022. 9. 15.(목) 14시 ~ 16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주관 | 조정훈 의원실 법무부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공동주최 | 기동민 의원실, 김형동 의원실, 류호정 의원실, 유상범 의원실, 윤재갑 의원실, 이명수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PROGRAM

■ 개요

○ 일시: 2022.9.15.(오후 2시~4시 반)

○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주최/주관 :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명수, 기동민, 김형동, 류호정, 유상범, 윤재갑, 이탄희

■ 일정

시 간	내용	담당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참석자 소개	사회
	개회사	조정훈 의원
	환영사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
	축사	공동주최 의원실
	기념촬영	
14:20~15:00	세션1 : 발표	
	발제1.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난민 행정의 현안과 개선 과제	정동재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발제2. 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 줄이기: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에 기반한 '불법화' 대응	한준성 학술연구교수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15:00~15:20	휴식	
15:20~16:00	세션2 : 토론	
	좌장	홍용표 교수, 前 통일부 장관 (한양대학교)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익과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서광석 교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김성호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영일 센터장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호 교수 (칼빈대학교)
16:00~16:30	자유토론 및 Q&A, 폐회	
16:30~	폐회식	

Contents

개회

- 개회사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3
- 환영사 :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5
- 축 사 : 공동주최 의원실 7

발제

- **정동재**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19
- **한준성** 학술연구교수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43

토론

- **서광석** 교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61
- **김성호** 회장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68
- **최영일** 센터장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70
- **이 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73
- **이일호** 교수 (칼빈대학교) 76

개 회

개회사



국회의원 **조정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노동자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도 공동주최로 뜻을 모아주신 기동민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가 아닌 다문화 국가입니다. 이미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통계청은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통해 이주배경인구수를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제 '대한 외국인'은 더 이상 낯설고 생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과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의미 있는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문화 다양성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으며,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순혈주의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주민들은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각기 다른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 경제 규모와 영향력에 걸맞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는 사회 발전의 초석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주·국경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총 세 번의 세미나를 통해, 이민청의 설립 필요성과 목표, 관할 정책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대계 차원에서 이민청 신설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회의원 조정훈

환영사



이민정책연구원장 **강동관**

안녕하십니까, 이민정책 연구원장 강동관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세미나에 어렵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외빈분들,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 그리고 이민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이민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담당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조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기동민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15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가 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약 46만 명, 결혼이민자 17만 명, 유학생 14만 명, 외국 국적 동포 35만 명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4차에 이르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해왔지만, 우리는 인구절벽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이라는 숫자가 이를 대변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70년, 전체인구 중 유소년 인구는 7.5%, 생산연령 인구는 46.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반이 되는 인구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국가의 중추적인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민자의 유입·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연구를 더 심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입과 사회통합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행해 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은 국가 미래와 이민과 그로 인한 사회현상들을 아울러 국가가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16년 전부터 이민청 설립에 대한 논의가 오갔으나, 아직도 성과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 장관께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추진 중요성을 강조하신 점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이민청 설립 방향에 관한 정-관-학이 머리를 맞대는 첫 번째 공론의 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발표자분과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우리 연구원 또한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한 이민정책의 발전과 향후 이민청 설립에 대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위세가 등등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이민정책연구원장 강동관

축사



국회의원 **이명수**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시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오늘「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정책세미나를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정훈 의원님,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함께 해주신 기동민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수는 약 215만명(2020년말 기준)으로 총인구의 4.1%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다문화·다인종 국가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을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5일, 외국인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민청 신설의 내용을 담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이민청 신설에 대해 공감을 해주셨고, 법안의 빠른 통과와 이민청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청 신설 공론화를 위해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학회장님을 비롯해 토론을 맡아주신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원장님, 서울대학교 김동욱 교수님, 한국행정연구원 허준영 기획조정본부장님,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김문강 팀장님,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님, 중앙일보 오영환 대구지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이민청 추진의 방향성이 정립되고, 이민청의 기능과 추진전략에 대해 다양한 고견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정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선진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이민청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를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회의원 이명수

축사



국회의원 **기동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이민청 톺아보기」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사 주최에 앞장서주신 조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8년 236만 명에서 201만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불법체류외국인 수는 같은 기간 동안 39만명에서 40만명으로 증가해 불법체류율이 15%에서 19.6%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없이 각 12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에만 중점을 둔 사후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의 관리 방식 다각화 및 제도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을 발표했으나,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민청 설립을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이민청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는 외국인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민청의 설립 필요성·역할·목표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나아가 안전한 데이터 구축, 합리적 출입국관리를 통한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은 만큼 건설적인 토론이 성사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민청 톺아보기> 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여해주신 분들의 생산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회의원 기동민

축사



국회의원 **김형동**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경북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조정훈 의원님과 공동개최에 참여해주신 의원님,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그리고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국가 간 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 주변국가들은 출입국·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현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민정책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조직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전망과 적정 이민 규모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논의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 불균형을 조절하고, 균형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국적, 이민에 대한 인식과 함께 노동시장과 일자리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과 향후 예정된 세미나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민자 수용과 관리에 따른 장단기 사회비용 분석,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을 위한 출입국과 체류 관리, 사회통합, 국적 관리 등의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회의원 김형동

축사



국회의원 **류호정**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개최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미나 준비에 애써 주신 조정훈 의원님,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을 비롯해, 세미나를 공동주최해주신 기동민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윤재갑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민청 추진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해주신 한국이민정책학회 문병기 학회장님, 다양한 시각에서의 토론을 위해 의견을 개진해주신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님,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님, 김문강 전북도청 국제협력과 다문화지원팀장님,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님, 오영환 중앙일보 기자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미 TV, 유튜브, 신문지면, 도서 등 곳곳에서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생활권, 직종에 따라 일상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주민은 함께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

등의 '대상 중심 지원' 패러다임을 넘어야 합니다. 국경 출입,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 '초기 정착' 위주의 정책과 더불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특정 부처가 통제하는 부서가 아닌 지원부처 산하의 청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본과 같이 법무성 외청의 지위를 부여하여 독립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게 하거나, 독일과 같이 입국, 비자 발급, 체류, 사회통합, 귀화 등 외국인 정책 전반을 총괄할 청 규모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민청 설립이 필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동향보고서 2018'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08명당 1명은 강제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해오는 기후 재난은 국제 사회의 이주민 증가 속도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민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 중국, 대만, 독일,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청 단위' 조직에서 이민 정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호주, 프랑스의 경우 지역사회에 이주 아동 지원 기관을 마련해, 언어 학습과 문화적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은 단순히 이민 정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사회 목전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이기도 합니다. 혐오 정서에 대한 시민의식을 되돌아볼 사회 정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된 외국인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 이민청 설립을 위해 논의할 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이민청 설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그리고 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회의원 류호정

축사



국회의원 **유상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권위원장 유상범입니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진지한 논의를 위해 함께 힘써주신 여러 의원님들,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 깊이를 더해주실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현재 한국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인구 위기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인구 절멸'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0.81명을 출산한다는 의미로서, 이는 문자 그대로 전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수년 간 출산율 감소는 급격히 가팔라지면서, 이대로라면 2025년 한국은 출산율 0.6명대라는 끔직한 인구절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부도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80조 2,000억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러한 추세는 더 이상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위기를 극복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이민청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 사회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이미 농어업과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없이 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민청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법무부 주요 과제로서 신설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민청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속 세미나를 통해 선진 이민 행정 제도와 관련된 민·관의 다양한 관점과 반짝이는 지혜가 모여서 이민청 개청에도 속도가 더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이민청 설립 논의·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회의원 유상범

축사



국회의원 **윤재갑**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출신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오늘「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향」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세미나를 주최해주신 조정훈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공동주최해주신 기동민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류호정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및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에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청년층의 꾸준한 도시이탈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자국민의 건축업 및 제조업 등 3D직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각 산업군에서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임금 문제,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단기적이고 인력 충원에만 치중한 현 제도와 산업군 별로 분산되어있는 소관 기관들로 인한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등 외국인근로자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의 설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6년 동안 논의만 오갔던 이민청 설립에 대해,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선진화된 이민법제 및 시스템 구축과 우리 사회·지역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언급하며 이민청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정부와 학계, 현장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청의 설립 필요성과 목표, 관할 정책, 추진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해법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향」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회의원 윤재갑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2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발제문 1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난민 행정의 현안과 개선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박사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2차 세미나: 국익과 인권의 조화

31st KIPA Anniversary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난민 행정의 현안과 개선과제

2022. 9. 15

정동재, Ph.D.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목 차

-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한국의 이민/난민 정책 현황
- 이주 관리(Migration Management) 정책: 현황과 한계
- 난민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과 한계
- 사회통합적 이민, 난민 정책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01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한국의 이민/난민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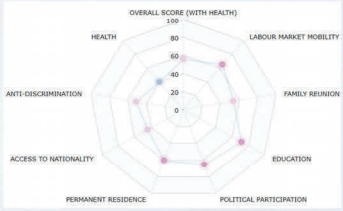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 체류 외국인의 통합 정책은 여전히 미흡 (외국인력 정책/제도에 대한 평가:고용허가제 관련(OECD, World Bank)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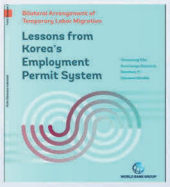
▪ 이민자 통합정책지수(MIPEX, 2020년) 결과: 56/100점

- **체류 외국인의 통합 관련 정부차원의 노력이 미흡**
  -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제도적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체류자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전한 생활영위에 여러 장벽이 여전히 존재 & 강화 양상. 특히 건강/의료 관련 접근성 및 자격부여 수준이 다른 이주 수용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
- **체류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는 허용(지역 선거), 그러나 정당의 참여권을 미부여**
- **국적취득 기회의 제한**
  - 이주아동에 대한 국적취득 경로 제한 & 영주권자에 대한 이중국적 미허용
-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미흡**
  - 체류 외국인 관련 차별금지 조항이 불명확,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 국제기준에 비교할 때 미흡



▪ 인력송출과정의 투명성 제고는 성과, 그러나 운영과정상 여러 쟁점/문제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 & 국가간 인력송출 과정을 투명화 하려는 노력을 제도화**
  - 2011년 UN공공서비스상(UN Public Service Award) 수상
-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환경 & 내실있는 보호 조치가 여전히 부족**
- **고용주-외국인노동자간 매칭 프로세스의 내실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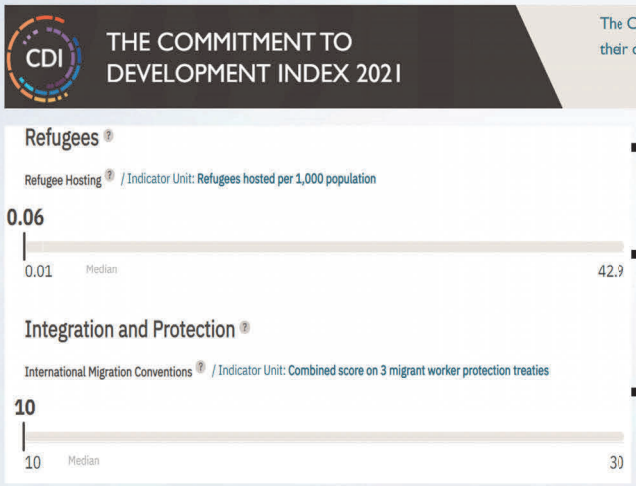


4

1 개발공헌지수(2021): 한국의 난민, 외국인노동자 정책 관련 우려 표명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한국정부의 저개발국 관련 개발지원: 이민자 통합노력 부족, 난민수용 의지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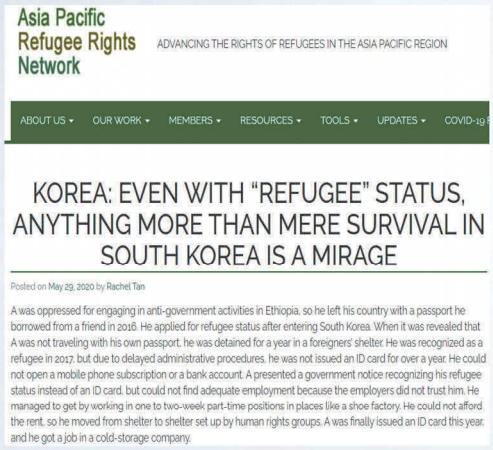
- 이민자 유입규모 증가에 비해 이들에 대한 통합노력이 유사한 이민자 유입국가들에 비해 미약
- 여러 국제규약 등에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수용에 있어 특히 저조한 상황(인구 천명당 0.1명 vs. 유사한 이민자 수용국가들의 경우 인구 천명당 난민수용 1.3명)
- 난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시각 & 이들을 한국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관련 정책적 노력이 필요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제규범/규약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준 노력 필요

5

1 한국의 난민 정책/제도에 대한 시각: 우려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난민인정자 조차 살기 녹록치 않은 현실



-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의 실제 체류 경험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기반

✓ "난민인정자라도 한국 사회에서 내국인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 "난민인정자라 하더라도 언어장벽, 문화 장벽, 차별 등으로 인해 단순 노무 이외에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며, 대부분의 난민인정자들도 공장이나 폐차장, 세탁소 등에서 일을 하는 상황.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자로서 제공받은 유일한 정보는 2페이지로 된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전부이다(에티오피아 국적 난민인정자)"

✓ "카메룬 국적의 난민인정자는 2명의 자녀를 케어하기 위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나, 다문화가족기본법상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한국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은 국적도 없이 무국적자 상황으로 살아가는 상황"

✓ "법무부는 이민자사회통합 프로그램(KIIP)을 통해 체류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 및 영주권 취득을 돕고 있으나, 난민의 경우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로그인한데 할지라도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가나 국적 난민인정자)"

6

1 UN인종차별 철폐위원회(2019), 미 국무부 대한민국 인권보고서(2021) : 한국 관련 및 권고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취약자 및 아동 보호 노력의 부족을 지적 (UN인종차별 철폐위원회 2019)

출처: U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한국" 관련 심의결과

- **출생등록:** 여권 발급이 어려운 이주아동의 미등록 체류 상황에 대한 개선
- **교육 접근:** 내국인에게만 교육기본법이 적용 & 이주 아동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되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
- **사회보장 접근:** 난민인정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
- **인종차별 금지**의 제도화 노력 부족
- **외국인 노동자 정책:**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가족결합 불가, 불법체류 위험성을 높이는 매우 제한된 비자변경 가능성
- **난민 정책:** 이의신청절차의 어려움 & 난민심사의 전문성 부족
- **다문화가족 정책:** 혈통주의적 체류관리 정책에 대한 우려

▪ 난민, 외국인노동자, 미등록/비합법 체류자 관련 정부정책의 문제점 지적 (미 국무부 대한민국 인권보고서 2021)

출처: 미 국무부, 2021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한국" 관련 심의결과

- **난민/비호신청자:** 2015~2018년 사이 출입국 난민 관련 업무담당자들에 의한 특정 국가(아랍계) 출신 난민/비호 신청자 대상 난민면접 과정 및 절차의 문제 발생(면접내용 조작 및 불투명한 관리·운영)
- **외국인노동자, 난민/비호신청자, 무국적자:** 외국인노동자 대상 육체적 폭력, 여권 압수, 부적절한 주거시설 제공, 성희롱/폭력 발생
  - 20여명의 난민/비호신청자들이 공항에서 난민심사 미회부 & 출국대기실에서 4일 이상 체류
  - 생계유지에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에 접근 제한 & 지역사회 적응의 어려움 ↑,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에게 보편적/기초 서비스 접근 제한
- **체류자격 취약자(미등록/비합법 체류자):** 취약한 체류자격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노출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노력 부족
  - 동일 업종, 동일 노동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이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시정조치 등이 미흡

02 이주관리(Migration Management) 정책: 현황과 한계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 이주 수용국의 이주관리(Migration Management)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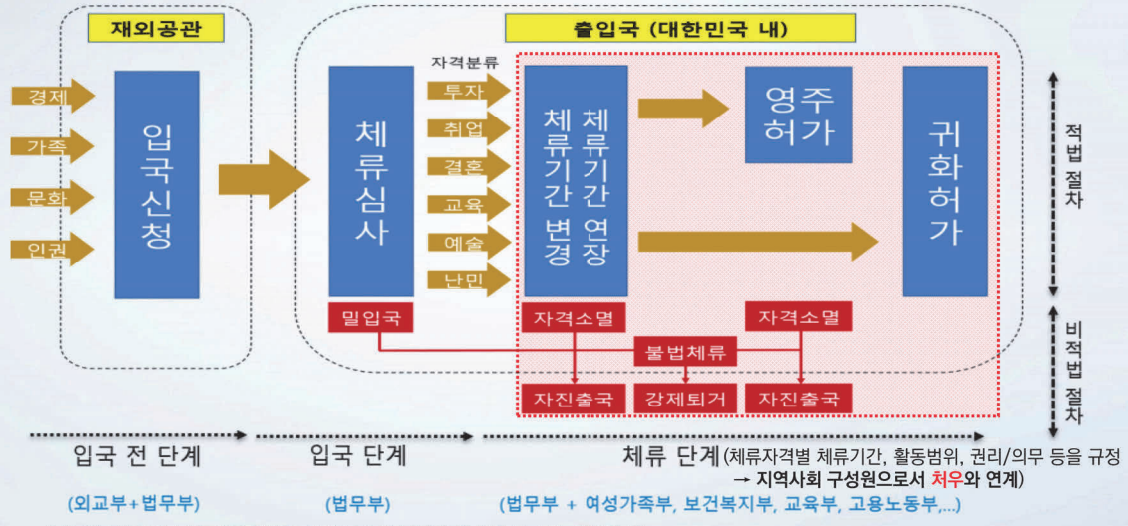
▪ 이주관리: 증가하는 외국인/이민자 유입에 대한 이주 수용국의 정책적 대응

- **이주 수용국 내 외국인의 입출국과 체류를 관리하고, 비호를 필요하는 난민과 기타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적법하고 인도주의적 방식의 국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련의 행정 기능(IOM, 2011)**
  - 누구를(외국인), 어디에서(외국인 국적), 얼마나(수용 규모), 어떤 방식(정책 수단)으로 유입시킬 것인지, 유입된 외국인들에게 어떤 사회적 신분(status)을 부여할 것인지를 설계 및 운영
- **비자(visa): 이주 수용국 입장에서 유입을 "원치않는" 외국인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정책 수단**
  - **"환영하는(welcoming)" 외국인 집단:**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관련 비용 감면/면제, 거주기간 확대, 고용 기회 부여, 가족결합 기회 제공, 국적취득의 기회 부여 등 통합/공존의 대상으로 인식
  - **"환영하지 않는(unwelcoming)" 외국인 집단:** 비자발급 과정상 여러 행정적 부담이나 규제조치 시행, 거주기간을 가급적 짧게 책정하며, 비자/체류기간 만료이후 반드시 모국으로 돌아가 것을 확인 및 위반 시 처벌/추방, 고용 기회 금지, 가족결합 기회 금지, 국적취득 기회/통로 차단 등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인식
- **비자/체류자격은 이주 수용국 내 합법적 체류를 규율하는 일종의 신분 체계**
  - 현행 체류자격은 36개 코드로 대분류(A-H)
  - 각 체류자격은 다시 세부 대상집단/목적/기능에 따라 세부 코드가 부여(공식적 3자리, 비공식적 4자리) & 세부코드까지 포함할 경우 약 240여개 이상의 체류자격이 분류·운영

2 외국인의 이주/체류 관리제도 운영 절차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외국인의 이주/체류 관리는 3단계로 구성: 입국 이전 단계 →입국 단계 →체류 이후 단계



출처: 정동재(2019).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 정부의 외국인 체류 관리제도 운영상 한계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문제의 제기: 정부의 체류관리 정책이 과연 존재해 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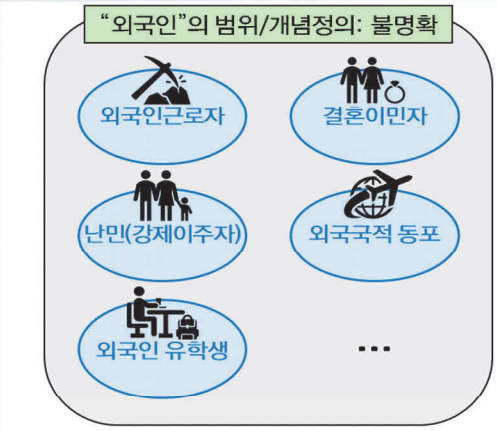
- **외국인/이민자를 바라보는 정책 당국의 시각과 방향이 불투명**
  -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의 이민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불투명, 혼란이 지속**
  - 외국인은 누구인가? 어디까지 외국인에 포함될 수 있는가(없는가), 국적취득자를 외국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 국내 체류 외국인은 "어떤" 대상인가? 체류 외국인 전체가 통합의 대상인가? 아닌가?
  - 국내 체류 외국인 전체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면, **통합이 아닌 정책대상집단**에게 정책 당국은 **어떠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는가?
-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제도 운영 체계의 적절성**
  - 체류 외국인들이 국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곳은 지역인 반면, **외국인 체류 관련** 지역(지자체)의 역할이 존재해 왔는가? 종래와 같이 지자체가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 업무에만 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한가?
  - 이민/외국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지자체간 관계, 역할이 상호 대등했는가? 지역은 향후 어떤 역할/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가?
  - (체류 이후 단계 관련)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들의 '주민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이나 법제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으로서 체류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를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

11

2 한계(I): 외국인/이민자 관련 개념정립의 불투명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외국인/이민자의 개념화(I) : "누가", "어디까지" 외국인/이민자에 포함되는가?



대상별? 영역/이슈별? any others?

재한외국인〉외국인주민〉외국인〉외국국적동포〉다문화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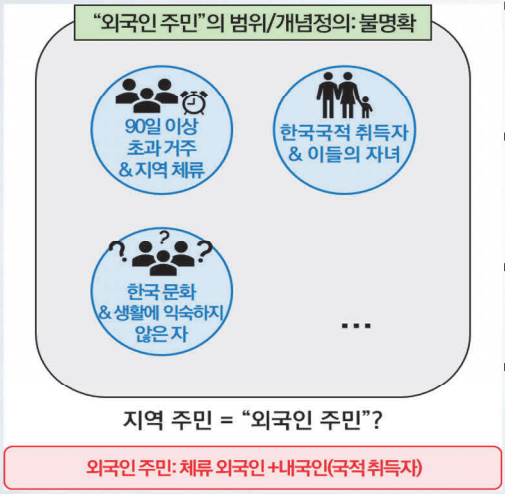
- **"외국인/이민자"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없는지) 법정 규정 불명확 : 종합/포괄적 개념화 부재**
- **개별법/정책들간 외국인/이민자를 상이한 수준/범위에서 규정**
  - 「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외동포법」, 「외국인지원업무편람」
- **개별법상 외국인/이민자 관련 법 규정(규제, 처우, 지원 등)이 정책 영역별(교육, 주거, 사회보장 등)로 실행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 & 갈등을 촉발하는 상황**

12

2 한계(I): 외국인/이민자 관련 개념정립의 불투명 (계속)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외국인 주민"의 개념화(II) : "누가", "어디까지" 외국인 주민에 포함되는가(되지 못하는가)?



- 「지방자치법」상 체류 외국인도 지역 주민으로 인정되나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에서 외국인을 배제
  - "내국인" 주민 vs. "외국인" 주민 의 이원적 관리 불가피
- 정부(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범위에 체류(등록) 외국인+내국인 (국적 취득자 & 이들의 자녀)가 동시에 포함되어 혼란을 야기
  -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여전히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아이러니 발생
- 지자체별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의 설치기준 부재 &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 지원 & 관리 한계
- 정부의 외국인 체류관리제도 및 행정 체계가 매우 복잡, 명확한 기준 부재
  -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새로운 체류자격 & 관련 규정이 만들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
  - 외국인 체류관리가 법규정보다 지침/매뉴얼 등에 의존하는 운영

13

2 한계(II): "선별적" 통합정책을 지향, 그렇다면 통합대상이 아닌 외국인들은?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갈래로 갈라진(bifurcated)" 통합패턴(Chung, 2019)

- 체류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듯 보이나, 통합/포섭의 대상이 극히 제한적
  - 현행 법/제도의 틀 안에서는 전문 인력, 결혼이민자, 재외동포를 명시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규정
  - 비숙련/비전문 외국인노동자와 난민, 이주아동(다문화가족 자녀 제외)의 경우 사실상 배제의 대상
  - 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집단에 대하여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할 수 있는지) 불명확(정책 공백)

<정책대상집단>		<경제활동 & 사회적 처우>	<사회경제적 구성>
외국인 근로자	숙련/전문 인력(E-1~E-7)	취업가능, 요건 충족 시 영주가능	적극적 포섭
	비숙련/비전문 인력(E-9)	취업가능(단순노무업종), 제한적 복지	배제
결혼이민자	혼인 지속자(F-6-1)	취업가능, 적극적 복지, 영주자격 부여	적극적 포섭
	혼인 단절자(F-6-3)	취업가능, 복지 제공, 체류자격 유지 불안정	포섭 / 상징적 지지
난민	난민 인정자	취업가능, 제한적 복지 제공, 실질적 관련 정보 접근↓	상징적 지지
	난민 불인정자(G-1-5/6) (신청자/인도적체류허가자)	일정기간(5개월) 후 취업가능, 제한적 복지	배제
유학생	인증대학 재학(D-2)	취업가능, 제한적 복지	상징적 지지
	컨설팅대학 재학 (D-2)	제한적 취업허용, 제한적 복지	
재외동포	방문취업(H-2)	취업가능(단순노무), 기초 복지 제공, 사실상 비숙련 노동자로 인식	상징적 지지
	재외동포(F-4)	취업가능(단순노무업종 취업 불가), 기초 복지 제공, 영주 가능	포섭

2 한계(III): 이민 정책을 둘러싼 중앙-지자체간 역할 관련 불명확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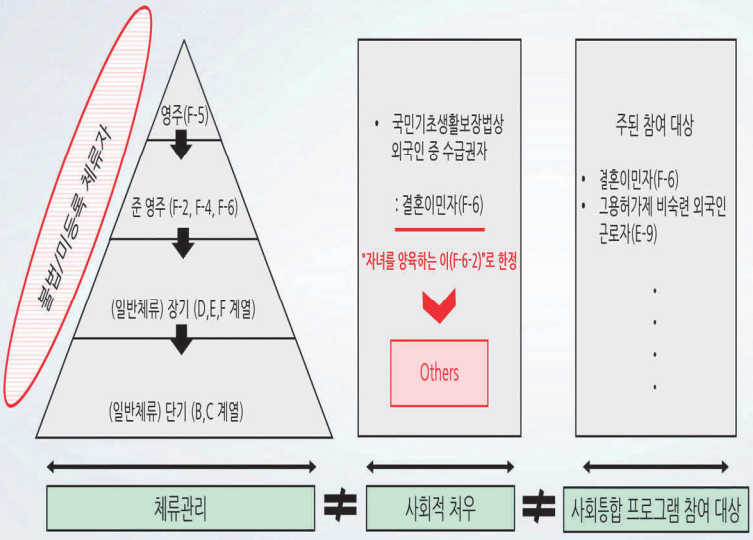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적 설계와 운영체계가 미흡

- **외국인 체류관리 제도/정책 추진체계가 누구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정교하게 관련 행정 체계를 구축해온 반면, 체류 이후 이들이 "어떻게" 지역 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국인들과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
  - 외국인 관련 〈체류 – 처우– 통합〉간 유기적인 연계성이 부족, 사실상 체류관리 정책 따로, 처우 정책 따로, 통합정책 따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양상
  - 국내 유입(entry) 당시 목적에 국한된 체류관리 행정: 체류 이후 단계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 양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경직적인 제도 운영
  -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체류관리 행정 & 체류 외국인 스스로 한국 내 자신의 삶을 계획하기 요원한 구조

- **체류 외국인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면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은 "지역"**
  - 지역 중심의 이민정책, 지역의 수요가 반영된 외국인의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지역(지자체)이 정부의 외국인/이민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무엇을(어떤 기능),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법규정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입법적 공백이 지속 & 지역의 역할을 확대 & 지역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외국인 체류-처우-통합 정책간 연계성 부족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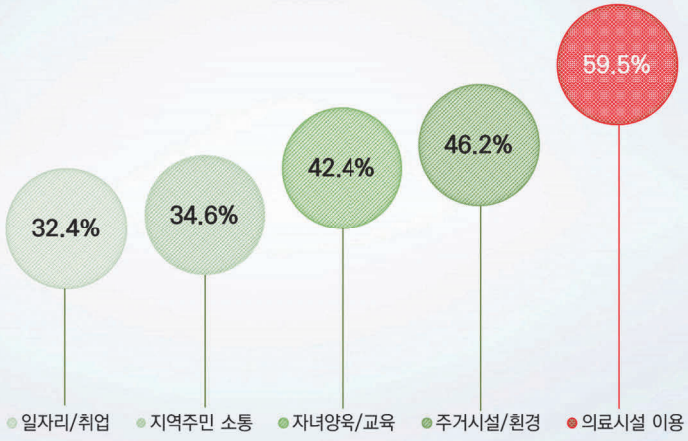


- **외국인의 체류-처우-사회통합 정책 추진상 연계성 부족**
  - 외국인 체류관리(자격 부여), 체류자격별 상응하는 사회적 처우, 사회통합 대상간 연계성이 미흡
  - 정부의 비자 체계 내 유입/체류하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정부 차원의 가치와 철학이 구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세부 외국인/이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처우 및 사회통합 대상의 범주화에도 연계되어 작동 필요

2 체류-처우-통합정책간 연계성 부족: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과정상 여러 한계에 직면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체류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내 적응/통합과정 관련 만족도: 분야/영역별 ("만족한다(매우+다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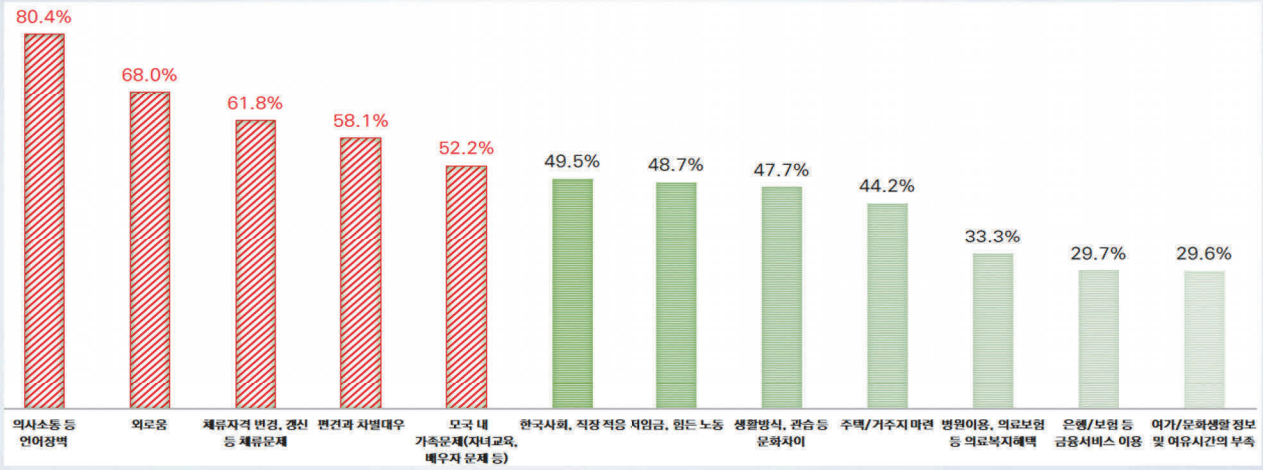
출처: 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통합 관련 설문조사(*n*=444), 한국행정연구원

17

2 체류 이후 "지역 주민"으로서 외국인: 일상생활 속 직면하는 어려움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체류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체류 중 힘든 부분: 분야/영역별 비율(%)



출처: 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통합 관련 설문조사(*n*=444), 한국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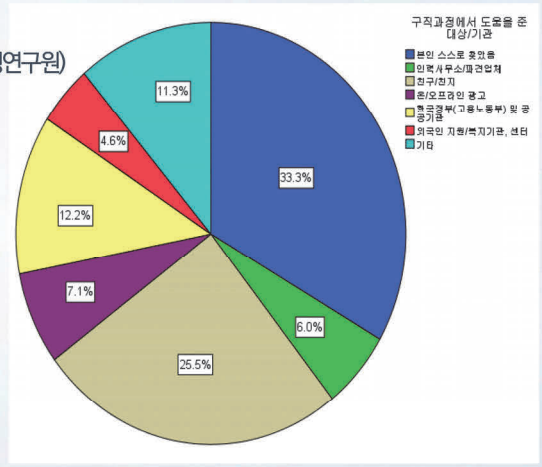
18

2 체류-처우-통합정책간 연계성 부족: 안정적 체류를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지원체계의 불투명& 삶의 질 차원의 접근 부재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이 요구되나,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일자리/취업 관련 공적 관리체계의 부재

- **체류 외국인의 상당수가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활동에 참여**
  - 57.4%가 취업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 ('22년 조사, *n*=444, 한국행정연구원)
- **일자리의 질 차원: 안정성이 떨어지는 취업 형태가 다수**
  - 파트타임,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44.1%)가 최빈값
  - 정규직(27.6%), 비정규직(27.6%)
-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한 구직 경향**
  -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본인 스스로"(33.3%), "친구/친지"(25.5%)에 의존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상황
  - 취업이 제한적인 비자 소지자 일수록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존
  - 언어장벽(39.2%), 체류자격상 취업분야의 제한(35.8%), 외국인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낮음(27.9%)을 취업 관련 어려움으로 인식



출처: 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통합 관련 설문조사(*n*=444), 한국행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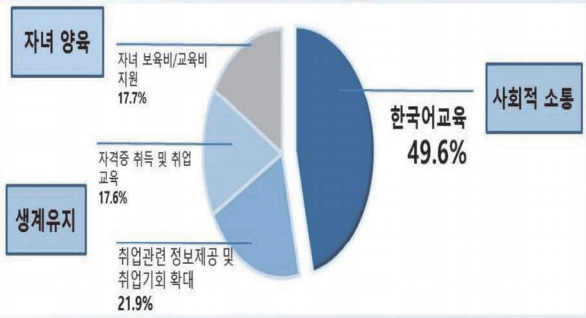
19

2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관련 우선 관심분야: 언어소통, 취업, 자녀 양육 지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적응/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행정/공공 서비스 분야

- **"한국어 교육"(49.6%)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표출**
  -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체류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의 해당 교육의 효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대두
- **일자리/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가 관찰**
  -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취업기회 확대"(21.9%),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17.6%) 등에 대한 높은 수요/욕구 표출
- **자녀 양육/교육 문제에 대한 어려움 및 지원을 필요**
  - "자녀 보육비/교육비 지원"(17.7%)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표출
  - 세대간 이슈가 체류 외국인들에게 중요하게 고려



출처: 정동재·윤영근·염지선. (2022). 체류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통합 관련 설문조사(*n*=444), 한국행정연구원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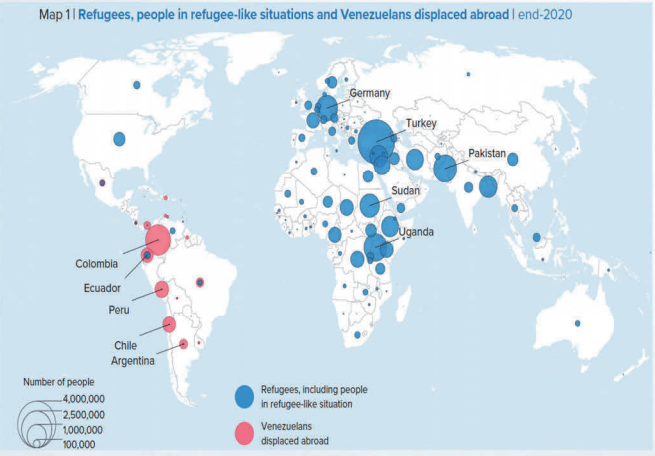
03 난민 정책 및 제도: 현황과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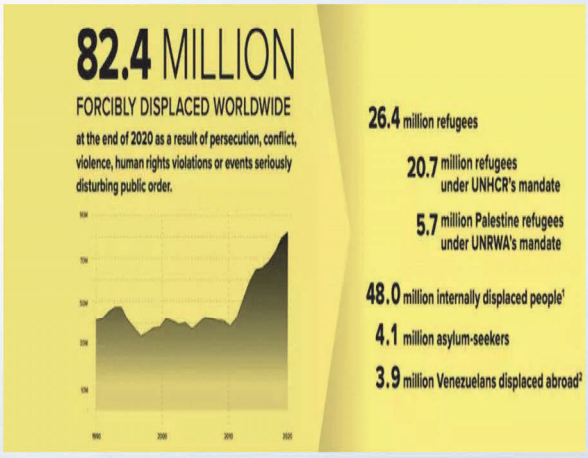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 글로벌 난민 위기: 전지구적 현상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간하는 2016년-2022년 "Global Risks Report"에서 전세계가 직면한 글로벌 위험요인 중 하나로 "비자발적인 인구 이동 및 난민 규모 증가(large-scale involuntary migration)"를 지적





3 글로벌 난민 위기: 난민 수용국의 대응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난민 보호"라는 원칙에는 공감 & 지원하되 자국 내 난민수용 및 보호에 대해서는 미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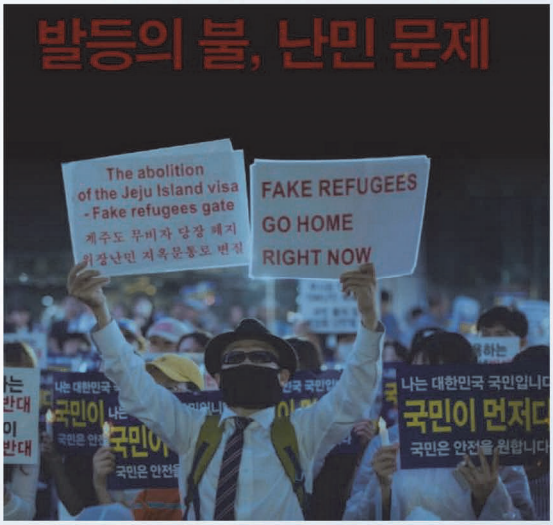
- **난민들의 자국 내 유입 자체를 배제/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mechanism)의 정교화, 고도화 경향**
  - "원격조정(remote-control)에 근거한 통제 매커니즘" (David. FitzGerald, 2019 , "*Refugee beyond Reach: How Rich Democracies Repel Asylum Seekers*")
    - 규제적 비자 시스템, 해상봉쇄, 국경 밖 지역에 이민 업무 담당 공무원 배치, 난민 이동을 돕는 이들에 대한 제재, 국경 연안 지역 등 내국인들과는 거리를 있는 지역에 난민 수용시설 마련
- **UNHCR에 대한 재정적 기여 강화 노력**
  - "난민 보호"라는 실질적 목표(난민/비호 신청자의 수용 및 인정 노력)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난민 관련 지원/기여 ↑
  - 한국 역시 유사한 양상의 난민 지원/기여 패턴이 관찰

23

3 한국 사회 내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 두려움, 문제, 지원, 가짜, 부담, 범죄, 테러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4

3 문제의 제기: "난민인가 아닌가"를 넘어, 이들의 체류와 삶을 입체적으로 담아 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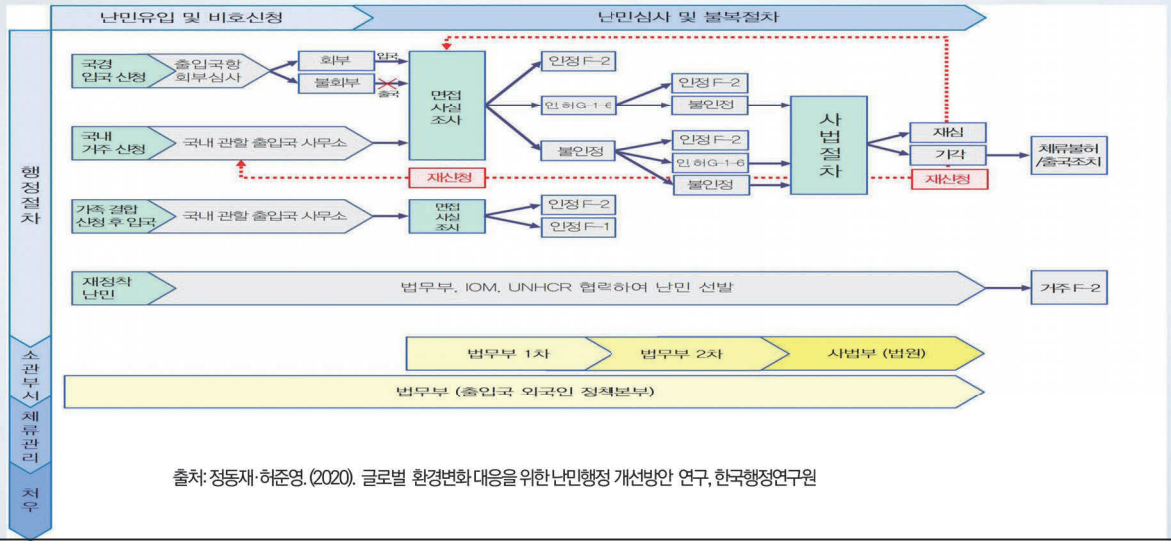
▪ 난민을 별도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

- **'아시아 최초' 독립법으로서 난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정/수용 의지를 공식적으로 제도화**
  - 난민의 지위, 인정심사절차 및 처우 등을 포함
  - 난민의 체류는 「출입국관리법」에 기반, 통합에 관련된 부분은 불명확(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지?)
  - 정책대상집단으로서 난민 관련 법들간 관계 설정이 모호
    - 「난민법」 vs. 「출입국관리법」, …
- **「난민법」의 상당 부분이 난민인정심사에 초점을 맞춘 구조**
  - "난민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것에 초점
  - 인정심사 이후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추진 체계나 절차 등의 정책적·입법적 논의가 부족
  - 특히 난민의 체류와 지역사회 적응, 통합 등에 대한 입법적 공백 상황
    - 난민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및 내부지침에 근거해 운영
    - 체류관리상 자발적 이민자/외국인 vs. 강제 이주자로서 난민을 대상으로 한 구분선 부재
    - 난민 불인정자(신청자, 재신청자 등)의 체류자격 불안정 심화 & 불법/미등록 체류 가능성 ↑

3 난민정책/행정 운영: 난민신청, 인정심사, 체류, 처우, 통합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난민인정심사에 초점을 맞춘 행정 체계: "체류 이후" 단계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응방향이 불투명



출처: 정동재·허준영. (2020).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난민행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3 한계(I): 난민/비호 신청자의 입국 & 난민신청 단계

▪ 난민신청 과정의 정보 제공 부족 & 법적 모호성이 난민신청 과정에서 발생

- **공항만에서 난민/비호 신청자의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결정과정의 법적 모호성**
  - 심사절차 vs. 신청서류 누락 여부를 단순 검토하는 검토 과정?
- **불회부 결정에 대한 사법소송 제기 시 , 난민/비호 신청자가 기약없이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 발생**
- **난민/비호 신청자에게 '친절하지 않은' 신청절차/단계**
  - 정책당국(법무부 출입국)의 체계적인 설명 부족
  - 난민신청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 부족

인천공항 환승구역서 4개월째 생활 아프리카인, 난민 심사 길 열렸다

공항 난민 루렌도 가족, 287일 만에 입국

인천안산/김영화 기자 | 호수 632 | 승인 2019.10.30 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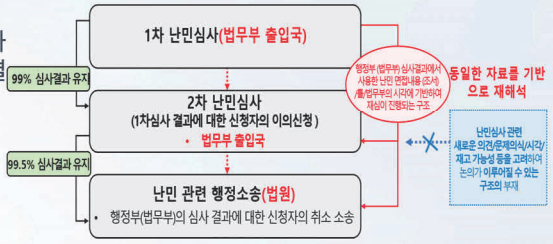
어느 아프리카인의 한국 공항 노숙 소송투쟁...사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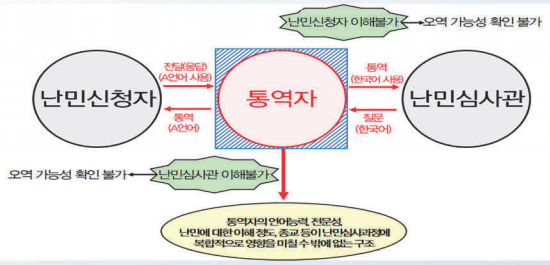


3 한계(II): 난민인정심사 단계

▪ 심사 적체에 따른 빠른 심사 & "난민이 아님"을 찾는 것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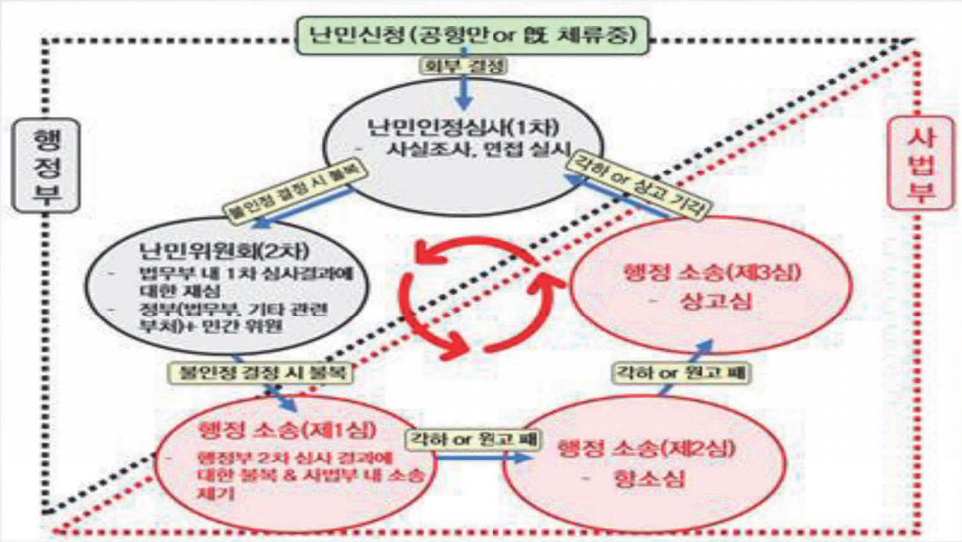
- **효율적, 빠른 심사만을 강조하는 운영 시스템**
  - 난민심사 적체의 실질적인 원인 규명 및 대응이 아닌, 빠르게 처리하는 것에 급급한 행태 (난민신청자의 심사과정상 절차적 권리 보장 결여, 난민면접조작 사건 등 정책실패를 초래)
- **난민심사기구들간 피드백 부재**
  - 법무부(1차심사)가 검토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해석하는 방식
- **"난민이 아님"을 찾는데 주력하는 심사 방식**
  - 이는 지극히 낮은 난민 인정율(1% 수준)로 귀결
- **사법부 내 난민 관련 행정소송 증가 및 이로 인한 판사들의 난민 관련 부정적인 인식/시각 증가**
- **난민심사 관련 통역인들의 역할 모호**
- **난민인정심사를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존재**
  - 재신청자 = 남용적 난민신청자 ?





3 한계(II): "반복신청"이 가능한 난민인정심사 단계, 그러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출처: 정동재·허준영. (2020).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난민행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3 한계(III): 난민의 체류관리 단계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강제이주자로서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류관리 정책의 부재

- **인도적 체류 허가자(G-1-6) 제도의 기형적 운영**
  -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난민인정사유를 가진 비호신청자에게 불인정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작동
  - 가족 결합을 불인정, 그러나 가족 관련 체류자격(G-1-12)을 설계
- **난민 불인정자의 체류 불안정 심화 & 불법/미등록 체류 가능성 ↑**
- **난민 불인정 가능성에 대한 행정적 판단 & 출입국의 자의적인 외국인등록증 반납조치**
  - 출국유예 상황의 난민 불인정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상실한 상황에서 합법도, 불법 체류 상황도 아닌 애매한 체류 상황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난민의 체류를 두고 법무부 출입국 내 부서들간 유기적인 협업/커뮤니케이션 부족**
  - 동일한 사안에 대해 난민 관련 부서 vs. 체류관리 담당 부서간 각기 상이한 대응, 해석을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3 한계(IV): 난민의 사회적 처우 관련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법령상 난민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마련, 그러나 실질적인 집행력 담보를 위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및 소관기간들간 역할, 협업 체계 등이 사실상 부재**
  - **법령상 규정은 대부분 난민인정자 및 이들의 자녀들만을 수혜/지원 대상으로 분류**
    - 난민 불인정자(인도적 체류자, 신청자, 체류자격 상실자)들의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체류를 위해 필요한 권리범위 및 지원 여부 등이 불명확
    -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난민의 사회적 권리와 관련된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특히 주거 및 취업 관련 지자체의 역할이 부재 →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민간/시민사회에서 대부분 맡아서 수행하는 상황
  - **추상적인 법령 규정만이 존재할 뿐 실제 정책현장에서 해당 규정들이 작동하기 위한 관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 난민인정자 조차 사회적 권리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
    - 관련 법령상 난민을 예외적인 포섭대상 정도로 인식하다 보니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조차 난민들의 관련 서비스 수혜자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나 이해도가 높지 못한 상황
      - 난민인정자의 수혜자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분야: 「장애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신청
  - **난민의 정책영역별 행정서비스의 접근을 위한 유관기관들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등이 부재**

3 한계(IV): 난민의 사회적 처우 관련 (계속)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국민국가 중심의 시각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 **사회보장 관련 법령상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국민"으로 제한**
    - 개별법상 난민을 사회보장 관련 지원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을 **주민등록상 "국민"으로 한정**하여 국민이 아닌 지역 주민으로서 난민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정책적 아이러니가 발생
    - 난민인정자라 할지라도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지원자격 자체가 제한되는 영역이 다수 존재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서민금융상품, 노숙인 관련 지원, 국가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서비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기초연금 등

32

04 사회통합적 이민, 난민 정책 구현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 윤석열 정부의 이민/외국인 정책 방향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통합, 인권보호를 강조, 반면 법무부 출입국의 경우 국경관리, "균형있는" 난민정책에 방점**
  - **〈120대 국정과제〉상 이민/외국인 관련: 통합, 내외국인간 공존, 이주민 인권보호 등을 강조**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국정과제 48번)
    - 다문화가족 지원(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지원),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 이주노동자, 난민 등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상 이민/외국인 관련: 국경관리 강화, 비자정책을 통한 경제/산업 성장 지원 등을 강조**
    -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 국경관리 강화, 불법/미등록 체류자 관리 등 체류질서 확립
    - 균형있는 난민정책
    -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인권친화형 보호시설 확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공항 외부의 출국대기시설 마련 등)

34

4 이민/외국인 정책 추진 관련: 국익 vs. 인권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이민/외국인 정책 추진 시 국익과 인권은 상충하는 가치인가?

- **국익(national interest)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
  - 주권국가의 국경관리(border/immigration enforcement)라는 안보 차원의 이슈 뿐만 아니라, 이주관리 전반(국경관리, 체류관리, 이민자의 지역사회 통합 및 내국인들과의 공존)에 걸쳐 포괄적으로 고려가 필요
  - 국익과 인권을 zero-sum game 형태로 인식할 경우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은 사실상 불가능
  - "우리 vs. 그들(us vs. them)"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닌 "우리 속 그들" 혹은 "우리 속 또 다른 우리"라는 인식과 접근법 아래 이민/외국인 관련 현안을 고려할 필요

- **이민/외국인 정책 추진 시 국익과 인권간 연계 및 양립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이주관리는 종래와 같이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체제 아래 인적 자본의 이동이라는 경제 차원의 이슈로 인식이 필요
  - 체류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관련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익에 부합

35

4 사회통합적 이민, 난민 정책: 지향 방향의 새로운 정립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지역 주민으로서 외국인이 가지는 "주민성"에 대한 시각 재정립

- **체류 외국인들은 다양한 체류자격과 목적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역동적인 존재**
  - 외국인 주민은 "지역 주민" + "외국인"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상 체류 외국인들은 지역 사회에 거소를 두고 살아가는 지역 주민 &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체류 외국인집단(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을 제외하고 이들에게 지역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보호/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적 아이러니가 발생
    - →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주민이자 성원으로서 외국인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 & 의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포용적이고 지역 사회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의 방향 모색 필요

- **"데니즌쉽(Denizenship)" 관련 논의 공론화 필요**
  - 해외에서 출생하였으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후 지역사회 내 합법적인 성원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가 향후 지역 중심의 외국인/이민정책 설계 시 심도있게 고려될 필요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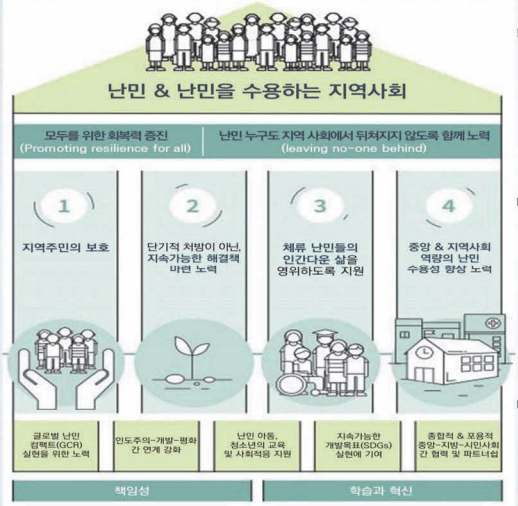
4 사회통합적 이민, 난민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 **"통합/공존"의 대상으로 외국인/이민자 정책 방향 설정**
  - 국경통제/관리적 패러다임 아래 체류 외국인들을 도구적 의미에서 접근하는 것을 지양
  - 외국인/이민자는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유입된 객체(object)가 아닌, 내국인과 한국 사회 안에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주체이자 내국인과 동일한 인간이라는 시각의 정립이 요구
    - → "사람" 중심의 국경(이주)관리 & 외국인 체류/출입국 행정 구현을 새로운 비전으로 정립
- **한국 사회 내 일방향적인 "동화"가 아닌,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잘 살기 위한 방향으로의 사회통합 정책 방향을 마련 필요**
  -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체류 외국인만의 몫이 아닌,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
  - 외국인들을 "도와주어야 할" 지원의 대상이 아닌, 한국에서 자립하여 새로운 삶과 사회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단계/절차로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을 설정

4 사회통합적 이민, 난민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사회통합적 이민 정책의 방향: 이민자/외국인의 자립 & 지역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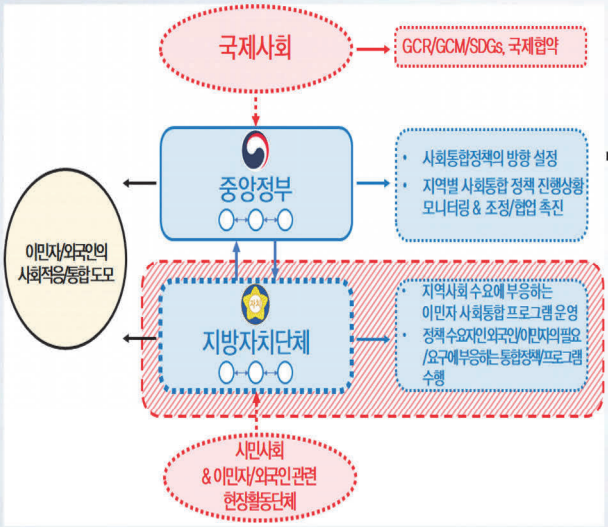
*출처: 3RP(Regional Refugee Resilience Plan, 2020-21)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사회경제적 구성(construction)변화**
  -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수동적 객체)이 아닌, 지역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통합 과정 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동반자로 규정
- **이민자/체류 외국인의 초기 정착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비용은 불가피 & 정착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정보 제공,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프로그램/사업 등을 운영**
  - 이민자의 특성, 처한 상황 등을 반영한 집단별 사회통합 프로그램/사업 등을 가발 & 추진 필요 (난민 – 박해/트라우마에 대한 회복력 & 사회 적응 노력 등)
- **체류 외국인 모두가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및 지원은 필수**

4 사회통합적 이민, 난민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사회통합적 이민 정책의 추진: 정부간, 정부–시민사회간 유기적 협력



▪ **체류 외국인/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거버넌스**

- 지역 중심: 중앙이 아닌, 실제 외국지역 사회의 수요 및 체류 외국인의 체류 외국인의 적응/필요 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
- 정부간, 정부–시민사회간 유기적 협력
- 정부 내 유관 기관/부처들간 협력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통합 정책/행정 시스템 구축 & 현장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의 마련

39

4 사회통합적 이민, 난민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누구를 통합할 것인가

▪ **통합 대상의 선정 기준 명확화**

- 합법적으로 정착/거주 중인 체류 외국인이면 누구나 통합의 대상 (「출입국관리법」 개정 필요)
- **통합 대상의 우선순위가 존재할 경우** 체류관리–처우–통합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 시스템 개편
- 통합 대상이 아닐 경우, 이들의 국내 체류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명시

▪ **난민 & 이주 아동 등 취약 집단(vulnerable group)에 대한 통합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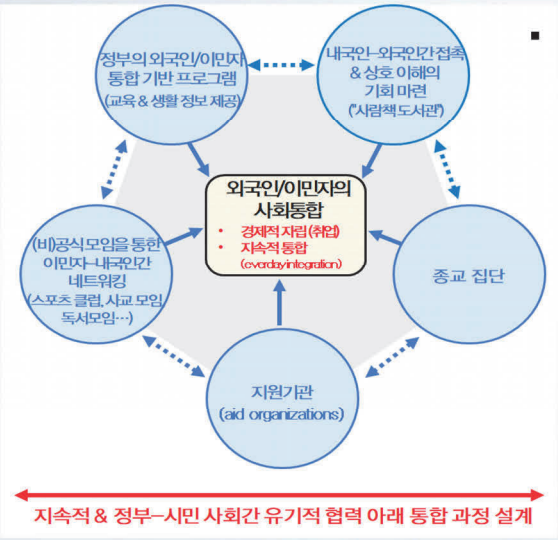
- 부가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인/이민자들과 다른 통합 노력이 필요
- 취약집단이 가진 취약성(트라우마, 박해 등) 등을 고려한 회복력(resilience) 증진 & 사회 정착/적응에 필요한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이 이루어질 필요
- 부모의 체류자격을 대물림하여 아동에게 불필요한 규제/처벌을 하거나 통합 대상으로 제외하는 것은 개선 필요

40

4 사회통합적 이민, 난민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통합을 위한 과정 & 방법론



▪ 통합 과정의 설계

- 다른 언어, 문화, 상황, 사연을 가지고 한국으로 온 체류 외국인을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
- 통합은 체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영역에서 진행 ("everyday integration")
- 통합 과정은 정부/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체류 외국인이 살아가면서 접촉하는 지역사회,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피드백 및 비공식 네크워크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과정

4 사회통합적 이민, 난민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환영받지 못하는/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대처

▪ "환영하지 않는(unwelcoming)" 외국인 대상집단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고민 & 시각의 교정이 필요

1) 불법/미등록 체류자: 상당 기간 한국 체류를 통해 이미 "한국화"된 체류 외국인의 존재

- 이들에 대한 단속, 구금, 추방을 통한 징벌적/통제적 방식의 체류관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필요
- 체류관리의 틀 안에서 이들을 관리 &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모색

2) 이주 아동

- 부모의 체류자격 미비/취약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법/미등록 체류신분을 가진 이주 아동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향적 접근이 고려될 필요
- 현행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처 방식(사실상 방치 & 통제) vs. 전향적 대처(통합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비교 & 평가 필요
- 핀란드 등 북구 여러 국가들에서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불법/미등록 체류아동(unaccompanied minors)을 통합 대상으로 인식 &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해당 사회 내 적응 및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시행

감사합니다
THANK YOU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2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발제문 2

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 줄이기: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에 기반한 ‘불법화’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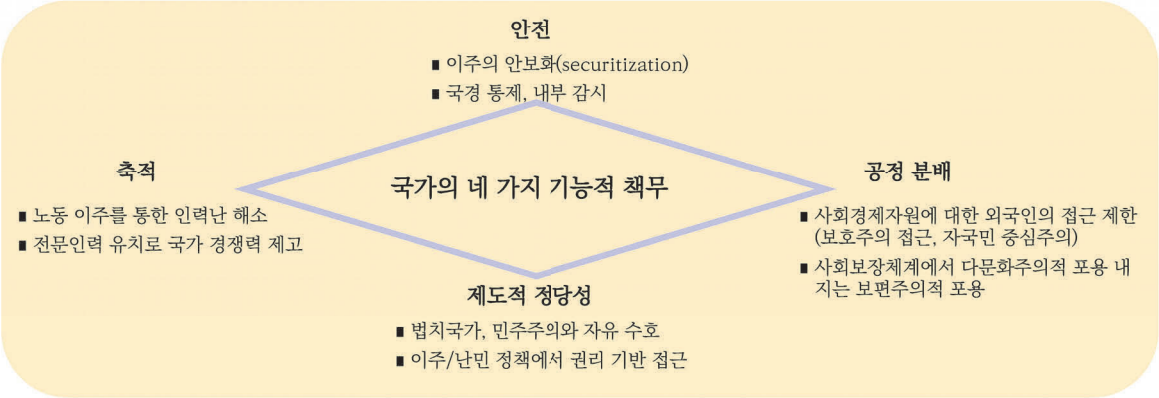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한준성 학술연구교수

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 줄이기: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DR)'에 기반한 '불법화' 대응

한준성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들어가는 말

❑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체류관리는 국가경영(statecraft)의 일환으로 곧 그 국가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과 같음. 정부가 통치 정당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국가의 네 가지 기능적 책무는 '안전(security)', '축적(accumulation)', '공평(fairness)', '제도적 정당성(institutional legitimacy)'임. 이는 이민정책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 (Christina Boswell 2007)



들어가는 말

❑ 국가는 이민정책 영역에서 복수의 책무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특정 책무를 배타적인 방식으로 강조할 수도 있고 상충하는 책무들을 전략적으로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

❑ 이 지점에서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표출된 '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임. 이 점에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3

발표 내용의 개요

❑ 본 발제는 이주민, 그 가운데 특히 비정규 체류 이주민(irregular migrants)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주요 특징을 검토하고자 함

❑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불법체류' 대신 이 용어를 사용)를 유발하는 복합적 환경 요인들, 이른바 '불법화(illegalization)' 메커니즘에 대한 다부처 대응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다부처 협력의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제안할 것임

❑ 이어서 다부처 협력이 긴요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regularization)'('합법화' 대신 이 용어를 사용)에 관해 논의함. 관련된 기존 논의와 실천에서 상대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었던 '사회적 성원(social member)' 개념에 기반한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4

‘법과 질서(law and order)’ 중심의 체류관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담긴 ‘체류관리’ 내용을 보면 논쟁적일 수 있겠으나 ‘불법체류 외국인’을 핵심 관리 대상 인구로 한 ‘안전 메커니즘’으로서의 특징이 다분해 보임

비전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정책목표	중점 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사회	1. 안정적고 실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① 불법체류 외국인 대응체계 개선(법무부)

② 불법체류 조장사범 엄단(법무부)

③ 단속 및 조사 전문성 강화(법무부)

④ 디지털 기반 정보 시스템 구축(법무부)

⑤ 세금·건강보험부당이득금 등 납부 유도(법무부, 경찰청)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법질서 교육 강화(법무부)

⑦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및 사이버팀 신설 추진(법무부)

❑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①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법무부, 경찰청)

② 민관 협력 활성화(법무부, 경찰청)

5

‘법과 질서(law and order)’ 중심의 체류관리

❑ 정부의 이주민 체류관리의 기저에 깔린 통치 합리성의 핵심은 ‘법치(rule of law)’와 대당관계에 있는 ‘법과 질서(law and order)’에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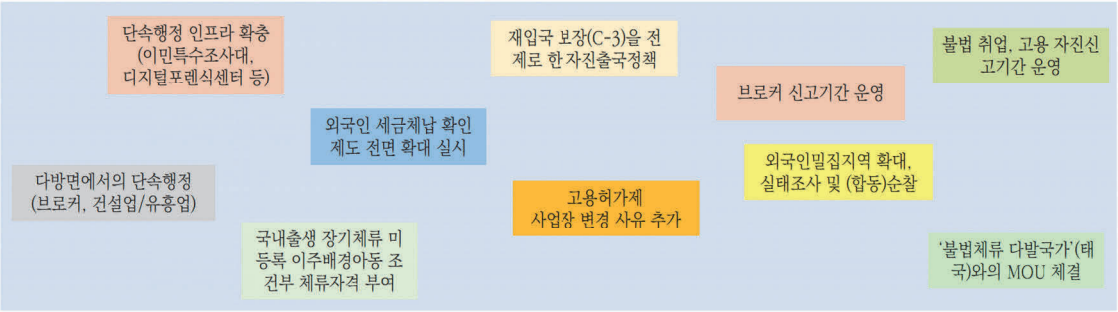
- 닉 치스만(Nick Cheesman)에 의하면 ‘법치’는 자의성 배격(non-arbitrariness)을, 법과 질서는 ‘불안정 소거(non-restlessness)’를 원칙으로 함. 법치의 주요 관심사가 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을 제거하는 데 있는 반면 법과 질서는 불안정 내지는 무질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둠. 법치에서는 법리적 판단을 수행하는 사법 제도의 역할과 공적 판결이 강조되는 반면에 법과 질서에서는 행정기구의 역할과 행정 명령이 부각됨

❑ 안전이 국가의 기능적 책무 가운데 하나이기에 정부의 이주민 체류관리에서 ‘불법화’ 대응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임. 하지만 이주민 체류관리에 대한 접근이 ‘안전’을 중심으로 협소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함. 국가경영의 일환으로서 이주민 체류관리가 지닌 잠재적 의미와 효과에 대한 너른 이해와 창의적인 사고가 크게 제약될 수 있기 때문임

6

정부의 '불법화' 대응에 나타난 지속과 변화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체류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와 경찰청을 필두로 다방면에서 '불법화'에 대응해 왔음



❑ 먼저 단속 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합동단속, 브로커 집중단속, 불법고용. 취업 자진신고제, 단기상용비자 심사 강화, 외국인밀집지역 순찰 및 실태조사 등 여러 면에서 단속 행정을 이어옴

7

정부의 '불법화' 대응에 나타난 지속과 변화

❑ 불법화' 대응의 효과 면에서 기존의 단속 위주 접근이나 자진출국정책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재입국 기회(C-3) 보장 자진출국유도정책(2019.12-2020.6)과 한국과 태국의 양해각서 체결(2019.11) 등 새롭게 추진한 정책들도 확인됨. 예술흥행(E-6) 비자(특히 호텔. 유흥 분야) 제도 개선과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으로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조치도 시행됨

❑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불법체류 유발환경'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임. '불법화' 대응에서 외국인의 '개인 책임성'을 강조하던 패턴에 함몰되지 않고 환경적 요인, 즉 '불법화 메커니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발상. 이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취업'과 고용주의 '불법 고용'을 '합리적 선택'이 되게끔 하는 구조나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그렇지만 '발상의 전환'의 폭은 제한적인 편임. 불법화 메커니즘을 브로커 시장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접근한 나머지 정작 함께 살펴봐야 할 더 중요한 환경 요인들을 정책적 시야에서 놓쳐 버린 것으로 보임

8

‘불법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

❑ 정부의 이주민 체류관리에서 ‘불법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발상의 변화폭이 제한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불법화’ 대응의 책임을 법무부를 위시한 한두 주무부처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책임분담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불법화’ 과정은 다양한 경위와 맥락을 보이며 그런 점에서 다면적 접근이 필요함

- 이를테면 법무부가 ‘불법체류 유발환경’의 핵심 고리로 지목한 브로커 시장은 날로 진화해 가고 있고,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대하는 가운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사증면제협정 체결국 출신 이주민의 불법체류 규모가 증대하는 추세인데 무비자 협정을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이처럼 불법화를 추동하는 여러 환경 요인들이 한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유관 부처들의 전문성과 자원 동원이 필요함. 한마디로 실효적인 ‘불법화’ 대응을 위해서는 다부처 협력이 필수적임

9

CBDR 기반 다부처 협력을 통한 ‘불법화’ 대응

❑ 그렇다면 체류관리에서 ‘불법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다부처 협력의 원칙으로 제안함

❑ CBDR이 국제사회의 공식 원칙으로 확립된 결정적 계기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였음. 지구 환경악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을 전제하면서도 오염 기여도와 대응 역량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화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천명

❑ CBDR 개념은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내포함. 첫 번째 요소는 국가, 지역, 글로벌 수준에 걸친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들의 ‘공동 책임’이고, 두 번째 요소는 각국이 처한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한 고려임

❑ 이처럼 기후/환경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공식 원칙으로 부상한 CBDR 원칙은 이후 빈곤퇴치와 개발협력을 비롯해 다른 이슈 영역들로 확대 적용됨. 또한 남반구와 북반구의 책임분담 및 국제협력의 이슈들을 다루는 데 적합한 원칙으로 인식되면서 이주와 난민 문제에 관한 담론에도 적용됨

10

CBDR 기반 다부처 협력을 통한 '불법화' 대응

❑ CBDR을 이민행정에서 다부처 협력에 적용하는 과정은 '불법화' 대응을 비롯해 이주민 체류관리의 행정윤리 측면에 대한 고민과 판단, 이를테면 '불법화' 대응의 '정당성'이나 '공공선'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서로 차별화된 지향과 전문성,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가진 부처들이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국가의 기능적 책무들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균형 있는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음. 이를테면 이주민 체류관리를 공통 이슈로 한 다부처 토의를 통해 '안전' 책무에 경도된 체류관리의 지향과 목적을 조정하거나 재설정할 수 있음

11

CBDR 기반 다부처 협력을 통한 '불법화' 대응

❑ 핵심은 법무부나 경찰청 외에도 다른 유관 부처들이 자신의 고유한 업무 영역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체류관리와 연계시켜 활용하는 것에 있음

- 이를테면 고용노동부는 지역사회의 실제 외국인력 수요를 실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수급체계를 혁신함으로써 '불법화' 요인이기도 한 이주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줄여나갈 수 있음. 이에 더해 체류관리와 인권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해 사업장 변경 제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장 이탈 요인을 줄일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주민권' 관점에서 지자체 외국인 체류관리의 기본지침을 마련하거나 우수 체류관리 사례를 공유할 수 있음.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용과 관련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은 건강과 방역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등의 비상 상황에서 포용적인 체류 안정화 방침을 제안할 수 있음

12

CBDR 기반 다부처 협력을 통한 '불법화' 대응

❑ 물론 '불법화' 대응을 위한 CBDR 원칙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이 직면하게 될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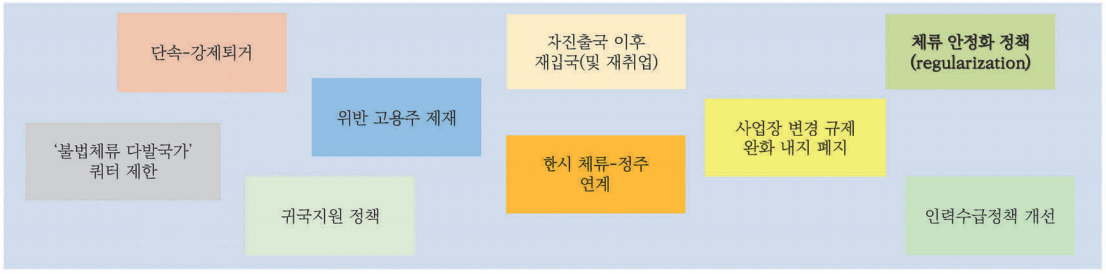
- '공동 책임'과 관련해서 유관 부처들 사이에서 '불법화' 대응에 대한 몰입도와 이주민 체류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는 각 유관 부처가 '불법화' 문제를 자신의 업무 영역과의 연관 속에서 정의하고 부처 책무의 일부로 수용하는 과정을 전제로 함
- 부처 이기주의나 칸막이 현상이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부처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인내와 협의도 중요하며, '공동 책임'을 전제로 한 다부처 협력인 만큼 소통과 조율을 위해 조정관(coordinator) 기능을 둘 필요도 있어 보임

❑ 이렇듯 CBDR 기반 다부처 협력은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기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함

13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 – 시간의 경과와 사회적 성원권

❑ 전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류 안정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통상 '합법화' 내지는 '사면' 조치로 불려 온 체류 안정화(regularization) 정책은 이주민 체류관리에서 '불법화' 대응의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아래 그림) 가운데 하나임



14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 – 시간의 경과와 사회적 성원권

❑ 체류 안정화 조치는 비정규 체류 상태에 있는 이주민에게 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권리체계 편입과 정치참여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정책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이를 충족한 경우 합법적 체류자격(status)과 그에 따른 법적 권리들(rights)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편입을 조력하는 정책수단임

❑ 체류 안정화 조치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됨

(1) 일정 기간 머문 것이 확인된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게 정주 지위를 자동 부여하는 상시(permanent) 체류 안정화 프로그램

(2)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에 신청한 비정규 체류 이주민 가운데 심사 요건을 충족할 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단발성(one-shot) 체류 안정화 프로그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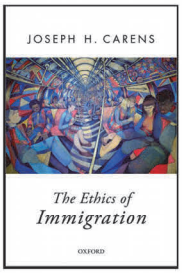
❑ 체류 안정화 조치에 논의의 초점을 두는 까닭은 두 가지임. 첫째, 체류 안정화 정책은 '불법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력의 원칙으로 제안한 CBDR을 가장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줄 수 있음. 둘째, 그간 한국 정부의 체류 안정화 조치에 관한 논의와 실천을 돌이켜 볼 때 상대적으로 공백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15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 – 시간의 경과와 사회적 성원권

❑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기반한 체류 안정화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이민윤리'를 전면적으로 주제화하여 연구해 온 조셉 캐런스(Joseph Carens)의 저작 **『이민윤리(The Ethics of Immigration)』(2013)**에 주목하고 그가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과 '체류 안정화 조치'에 관해 개진한 입장을 소개, 해설하고자 함



❑ 특히 이를 통해 '사면(amnesty)'에 아닌 '정착(settlement)'의 논리에 기반을 둔 상시적 체류 안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16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 – 시간의 경과와 사회적 성원권

❑ 캐런스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함. '이들의 비정규 지위(irregular status)는 체류한 기간에 따라서 변경되어야만 하는가?' 그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이민윤리 원칙을 밝힘. "시간의 경과(passage of time)는 체류에 대한 [정당한] 도덕적 요구를 창출한다."(TEI 152) 체류 기간과 체류권의 긴밀한 연관성을 짚은 것임

❑ 핵심은 '시간의 경과' 그 자체가 아님. 시간의 경과가 의미하는 바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사회적 성원권(social membership)' 형성과 관련됨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이들은 다양한 인연(connections)을 그으면서 살아간다. 이들은 배우자와 동반자, 아들과 딸, 친구와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된다. 더하여 이들은 갖가지 경험(experiences)을 쌓아 간다. 누군가의 생일, 목소리 톤, 여유감, 공원과 동네 상점, 거리의 풍경,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 꽃향기, 지역 특유의 억양, 별빛, 공기 감촉. 이 모든 인연과 경험은 이들의 삶에 목적을 불어넣고 새로운 질감을 더한다. 이들은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거즌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깊게 뿌리를 내린다."(TEI 150 필자 번역)

17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 – 시간의 경과와 사회적 성원권

❑ 이러한 관점에서 비춰 볼 때 일정 기간을 도과해 체류하는, 즉 사실상 '정착'한 이주민을 정부의 공식적인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방하는(deport) 것은 합당하지 않음. 이에 더해 사실상 사회적 성원이 되었음에도 체류자격 상실/취소를 이유로 언제든 추방될 수 있는(deportable) 상태로 둔다면 일상에서의 취약성과 작업장에서의 착취 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캐런스의 입장이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국가의 강제퇴거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그는 체류관리와 관련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절제'를 강조함

18

‘사면’이 아닌 ‘사회적 성원권’에 대한 법적 인정으로서의 체류 안정화 조치

❑ 캐런스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 함의를 도출함

> “국가들은 때때로 단발성 대규모 사면 조치(amnesties)를 단행한다든지 아니면 인도적 고려에 기반해 개별적인 방식으로 체류권을 부여하는 식의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신 일정 거주 기간 … 이상 체류한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게 자신의 법적 지위를 정식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individual right)’**를 확립해야 한다.”(TEI 151)

- ‘사면(amnesty)’이 아닌 ‘정착(settlement)’의 논리와 이주민이 사회적 성원으로 갖는 ‘개인적 권리’ 강조
- 단발성 대규모 사면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체류 안정화 프로그램 운용을 주창
- 국가의 책무들 가운데 ‘제도적 정당성’에 초점을 두고, ‘법과 질서’가 아닌 ‘법치’를 우선시
- 이주민 특정적 접근에 기반한 다문화주의 접근 보다는 인권에 기반한 보편주의 접근이 두드러짐

19

‘사면’이 아닌 ‘사회적 성원권’에 대한 법적 인정으로서의 체류 안정화 조치

❑ 그렇지만 그도 인정했듯이 정작 사회적 성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의 산정 문제는 논쟁적임. 자의적인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국가마다 기준 기간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

❑ 그렇지만 사회적 성원이 된 비정규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에 있어 체류 기간이 핵심적 고려 사항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원칙이 기준 기간 설정을 합당한 범위 내로 통제할 수 있음

❑ 나아가 캐런스는 체류 안정화 조치를 통해 거주(정주)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궁극적으로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먼저 정주(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임

20

체류 안정화 정책에 대한 회의론과 캐런스의 반박

❑ 국가는 정치공동체로서 집단적 자기 결정권을 지니기에 성원권에 대해서도 포용과 배제의 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

⇨ 이미 오랜 기간 머물며 정착해 사회의 성원이 된 비정규 이주민을 집단적인 방식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정으로서 부정의(injustice)를 초래함

❑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정규 이주민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이는 법규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입국을 기다리는 외국인에게는 불공정한(unfair) 일이 될 것이라는 견해

⇨ 법적 절차를 밟아 입국해 일하는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경우 거주국 시민을 배우자로 두는 등의 사회적 관계를 갖지 못한 경우 '한시 체류자'로 분류되어 애초부터 이민 경로를 밟을 수 없는데, 이렇듯 이민 경로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21

체류 안정화 정책에 대한 회의론과 캐런스의 반박

❑ 위법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격이라는 비판

⇨ 이민법 위반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위법의 이력만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특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마치 형사 범죄자처럼 대한다면 이는 법절차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우리는 과속한 운전자를 두고서 불법 운전자(illegal drivers)라든지 범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TEI 155)

❑ 비정규 이주민에 대한 법적 체류자격 부여와 자국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

⇨ 첫째, 장기 거주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사회적 성원권을 인정한다면 자국민 취약계층 보호 논리를 앞세우며 이에 대한 법적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고, 둘째, 오히려 체류 안정화 조치를 통해 비정규 체류 이주민이 공식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노동기본권과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게 되면 이는 일터에서의 취약성과 착취 가능성, 그리고 고용주의 비정규 체류 이주민 고용 유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셋째, 양자택일의 접근은 갈리치기 효과를 발하게 되어 공통의 이익을 위한 연대 형성에 걸림돌이 됨

22

체류 안정화 정책에 대한 회의론과 캐런스의 반박

❑ 체류 안정화 조치가 오히려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양산할 것이라며 '유인 효과(incentive effect)'를 우려하는 견해

⇨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음. 프랑스의 경우 장기체류 비정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 체류 안정화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지만, 이 조치가 비정규 이주민 규모 증대로 이어졌다는 경험적 근거를 확인할 수는 없었음. 더하여 비정규 이주민의 규모가 증대하거나 줄지 않는 요인은 복합적이기에 설령 체류 안정화 조치 이후 그 규모가 증대하더라도 그 상관성이나 인과성을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됨

23

이주민 체류관리 개선 방향

적용 대상	논리	정책
고용허가제 등 한시이주노동제도로 입국, 취업 중인 한시 이주노동자	민주적 정의	한시적 체류와 정주를 연계하는, 접근가능한 경로의 제도화
일정 기간 이상 장기 거주 비정규 체류 이주민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포함)	사회적 성원권, 기본권으로서의 체류권	상시 체류 안정화 프로그램 운용
일정 기간 미만 거주 비정규 체류 이주민	체류관리, 인력수급, 방역 등 현실적 필요와 인도주의 접근을 종합 고려	단발성 '사면' 프로그램 시행

24

이주민 체류관리 개선 방향

❑ 비정규 체류 이주민 대상 체류 안정화 조치의 경우 두 갈래의 접근이 가능함. 하나는 사회적 성원권 관념에 기반해 장기 거주한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게 정주 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권을 보장하는 상시 체류 안정화 프로그램의 운용이고, 다른 하나는 체류관리, 인력수급, 인도주의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는 비교적 대규모의 단발성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임. 전자가 안정적 체류에 대한 이주민의 '개인적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공동체의 필요와 현실 여건을 고려한 절충적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한시이주노동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고용허가제의 경우를 보면 최장 10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체류, 취업하더라도 정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음. 제도가 '영구적 한시 체류자'를 양산하는 형국인 셈임. 이는 민주적 정의의 시각에서 볼 때 심각한 윤리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일정 조건을 전제로 한시적 체류와 정주를 연계하는, 실효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체류자격 전환의 '경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25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2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토론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익과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서광석 교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성호 회장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최영일 센터장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칼빈대학교 이일호 교수

토론문1

서광석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며

오 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 이민·다문화라는 화두는 대한민국을 새로운 실험대에 올려놓았다. 대한민국은 국내 체류 이민 배경인구 3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이행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은 국가 성장동력 저하로 산업 전반에 좋지 않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소통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익과 인권의 조화를 통한 공존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단일민족 의식, 가부장적인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본 토론문에서는 1)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인구문제와 이민정책'에 관하여 미래지향적·종합적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이를 주관할 수 있는 핵심 조직(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2) 이민정책을 추진하는데, 국익과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에 관하여 요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40만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인구문제와 이민정책'에 관하여

1.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현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외국인·이민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민자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편견, 차별과 혐오로 뒤범벅이 된 채 늘 같은 시간대에 머물고 있다.

인구절벽이 없는 인구개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총량적 국부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민정책 업무가 정부 여러 부처에 분산 집행되고 부처 간 칸막이가 높고 협업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총괄기획 및 조정능력이 미흡하다.

[독일을 포함 이민 선진국은 자연 감소를 이겨낼 유력한 인구공급망으로 나라 밖에서의

이민 확대를 선택했다. 인구 증가·사회 유지에 긍정적인 우수자원을 자국 사회에 흡수하고자 경쟁적인 이민정책을 내놓고 그들을 불러들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 중국은 '국가이민관리국'을 신설(2018년) 우수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위하여 인종.국적.비용 불문의 3원칙을 수립 운영하며, 일본은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인 '출입국재류관청'을 신설(2019년) 종합적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을 전개하여 해외 인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2. 인구조정정책 수단으로의 이민정책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졌다.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하여 10년마다 인천광역시 규모의 도시가 하나씩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수 있다.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용하거나, 출산장려를 위해 모든 분야를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이유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오늘의 포럼을 통하여 정부 영역에서는 인구절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포용적 이민정책으로의 정책변화와 더불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스, 메르스 사태는 '질병관리본부'를, 코로나 사태는 '질병관리청'을 탄생시켰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사스, 메르스, 코로나와 같은 회색코뿔소 현상(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범죄 등)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이 되기 전에 대책을 만들기 위해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 총괄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3.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종합적·미래지향적 조정자 역할

□ **이민정책 기본방향**
- ■ 소극적 이민정책 ➜ 미래세대 준비 적극적·선제적·포용적 국가 이민정책
- ■ 분산 수행 이민정책 ➜ 컨트롤타워 설치로 조정자 역할, 종합적·체계적 통합관리

□ **이민정책의 목표**
- ■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문화 다양성 및 사회통합 촉진/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 국가발전 전략으로써의 총량적 국부증대

□ **외국인사회통합기금 신설**
- ■ 외국인으로 기인한 새로운 수입으로 기금 마련(K-ETA)
- ■ 조직의 조기 안정화 및 원활한 사회통합업무 추진

□ **국민 일자리 잠식(경쟁), 무분별한 이주, 불법체류자, 외국인범죄, 난민, 무임승차 등**
- ■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조직을 신설한다고요?
- ■ 아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하다.

Ⅲ. 이민정책을 추진하는데, 국익과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대한민국은 누구나 보편적 인권과 자유, 세계평화를 헌법에 명문화한 국가이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국가의 이익과 어떻게 조회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변화를 꾀해 온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인 것이다.

인종, 민족, 종교, 문화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의식이 짧은 시간 내에 변하기는 쉽지 않다. 실상 존재조차 명확하지 않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을 위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 의식에 대한 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1. 국익과 인권위 관계

국익과 인권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국익과 인권의 조화는 한마디로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대변된다.

[인권과 국권의 관계를 호도에 비유하자면, 국권은 단단한 호도 껍데기, 인권은 고소한 호도 알이다. 단단한 호도 껍데기의 충분한 역할(방패막이)가 없다면 고소한 호도 알맹이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아무리 단단하고 튼실한 호도 껍데기라도 고소한 호도 알이 없다면 호도라고 할 수 없다. 즉 인권과 국권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 그 나라에 가 있는 한국인의 인권 또한 잘 보장되고, 국제적 위상도 제고될 수 있다. 그렇다고 외국인의 인권만 중시하고 국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민정책 입안자는 국민과 소통을 통하여 인권과 국익의 균형점을 찾아내야 하는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2. 외국인력 수급 및 불법체류

체류 외국인 증가는 관광 산업의 발전, 국가 홍보 등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있다. 그 대표적인 역기능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문제이다. 불법체류는 일반적으로 체류국의 출입국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으로 순 인구의 감소와 노동 인력 부족 등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내놓았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오히려 여성 합계출산율은 0.8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지난해 인구데드크로스를 지나 순 인구의 감소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 체류 중인 이민 배경을 지닌 자(불법체류 및 합법체류자, 귀화자 등 모든 이민 배경을 지난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들을 잠시 머무르는 손님으로 만들 것인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로 함께 할 것인가에 관하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칫 국익 지상주의로 흘러 단 한 명의 외국인이라도 보편적 인권이 짓밟힌다면 이는 대한민국 아니 인류 전체의 인간성이 폄훼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국민적 소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제주 감귤농장주의 하소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 없이 감귤농장 운영이 어렵다. 한국인 중 그 누구도 감귤농장에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 얼마 전 대파 한 단에 만원이 넘은 적이 있다. 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아서 농사를 지은 대파밭에서 대파를 생산할 노동 인력이 부족해서 급등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 일자리 잠식은 옛말이 되었고 대다수 국민은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3,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시스템 작동은 되고 있는가?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가시적으로 불거지지는 않았으나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건국 이래 최고치인 39만 명(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20%)의 규모인데 폭증 원인을 코로나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는 연중 상시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처리를 위해 단속 체제를 지난 2015년부터 6개 광역 단속 체제로 전환했고, 2개 이민특수조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좀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비쳐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며,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여 외국인과 국민이 소통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단속만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 300여 명이 단속으로 현재 발생한 40만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정관리 숫자(체류 외국인의 15% 이내)로 감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의 경우, 1993년 불법체류 외국인이 30만 명이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법 위반자 법 적용 강화,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비자발급 요건 강화, 유연한 출구전략을 꾸준하게 시행해 현재 10만 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1)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 표명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연중 상시적 합동 순찰 및 사전 계도를 통한 예방 활동 강화와 더불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한다든지 단속 공무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병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즉 물리적인 단속보다는 불법체류자가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유연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2)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 시행

법무부는 지난해 한시적 시행으로 호응이 있었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를 보완하여 조기에 동포뿐 아니라 전 국가를 대상으로 재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간 이동이 적은 지금 제도를 만들어 홍보하고 요건(여권, 항공권, 재입국을 위한 한국인 사용자 보증제 등)을 갖춘 자에 대한 사전 접수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자진 귀국을 하는 외국인에게 재입국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그들 스스로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본국으로 귀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이전에 자진 출국제도 시행으로 출국한 외국인(자진 출국 후 비자 신청 유효기간 1년) 중 코로나 사태 발발로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정부 시행 정책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주어야만 향후 시행 정책에 적극 호응을 할 것이다.

3) 불법체류 원천 차단책 마련

정부는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 및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해서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임시급변대책이 아닌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감소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조약 체결을 일시 중단하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K-ETA(전자여행허가제)를 전면 확대 시행으로 입국 전 국익에 도움이 될 이민자를 선별 입국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외국인으로 인한 국가 수입이기에 수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운영하면 국민의 조세 저항도 감소할 수 있다.

비자발급 인적인프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비자 담당 공무원의 경우, 비전문가인 일반 외교관이 비자를 심사하는 재외공관이 많다.(영사 1명이 1년에 20만 건을 심사하는 재외공관도 있을 정도로 비자 심사 인력 인프라가 최악으로 현실적으로 비자 심사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임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 재외공관 비자발급 업무의 경우, 법무부 전문가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철저한 비자 심사를 통한 비자발급으로 불법체류 원천차단에 노력해야 한다.

[필리핀에 근무했던 비자 담당 영사에 의하면, 주, 필리핀 미국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는 26명, 주, 필리핀 일본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는 6명인데 비해 한국대사관 비자 담당 영사가 단 2명에 불과하며 1인당 연간 10만 건씩을 처리했다고 한다. 국내 불법체류자 관리에 앞서 불법체류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한시적 합법화

불법체류자 중 일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에는 다른 범죄 없이 우리 산업현장에서 국민이 하기 싫어하는 고된 일을 하는 외국인도 있다. 이들은 이미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산업 숙련도도 꽤 있는 상태이므로 한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이미 한국 사회와 산업현장에 어느 정도 적응된 이들을 잘 활용하면 국익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불법체류자 중 다른 형사 범죄경력이 없고, 한국어 능력 및 일정 기술능력이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주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범칙금(최고 2천만 원)을 부과하여 불법성을 우선 해소하고 경과 기간에 따라 사다라형 체류자격을 부여를 통해서 불법체류자 감소, 세수 증가, 외국인 인권 및 권익 보호 등을 꾀할 수 있다.

[이미 불법체류자 중 결혼이민 자격이나 난민 신청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한 후 합법적인 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실무 구조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범적 실시 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기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이들이 부담한 범칙금을 재원으로 불법체류자 예방을 위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 불법체류자 단속 및 외국인 보호소 인프라 개선, 신속한 강제 퇴거 절차 집행을 위한 전용기 운영 등 다양한 활용 등 연구가 필요하다.]

4, 사다리형 합법화 조치

□ **강력한 법 집행**
- ■ 법과 원칙 ➜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정책 추진

□ **원천차단 노력**
- ■ 외교적인 노력 ➜ 불법 체류율 높은 국가와의 비자협정 잠정 중단
- ■ 불법체류 유발 환경 개선 ➜ 수요공급 개선책 마련

□ **사다리형 합법화 조치**
- ■ 역기능(국민 일자리 잠식, 합법 인력 제도 훼손 등) 최소화 ➜ 순기능 최대활용
- ■ 형사 전력 및 미풍양속/한국문화 이해/기술능력 ➜ 범칙금 부과(불법 해소)

□ **형평성, 제도의 악용, 언젠가는 또 등**
- ■ 법을 지키며 잘 적응해서 사는 외국인이 손해?
- ■ Cash Job, 세금, 불법체류자 의료혜택 등 양성화 및 역차별 문제 해결

토론문2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현황 및 문제

○ 저출산과 고령화를 더 많이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어가는 조업 포기와 생산량 감축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어가인구는 9만 7천명으로 5년 전 12만 8천명 보다 24.2% 감소, 2045년에는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이라 전망

○ 어촌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산업의 높은 진입장벽과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으로 청년을 비롯한 일반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 기피하는 산업으로 어가인구와 어업 종사자는 대부분 고령층

○ 고용허가제(E-9)와 외국인근로제(E-10)가 전국적으로 시행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노동인력의 초과수요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성행하고 있음.

○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래 외국인 근로자가 수산업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어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수는 급감

- 어선은 출어를 포기하거나 단축 조업, 양식업은 관리 및 출하시기를 맞추지 못해 생산량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고 생산현장은 물론 가공공장도 인력을 구할 수 없고, 인력을 구한 경우에도 인건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및 도시민의 어촌 유입정책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어촌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정책도입을 검토할 때

○ 일본은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를 배워 2018년 외국인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2019년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하여 외국인 정책의 컨터롤타워 역할과 업종별로 필요한 인력을 세부적으로 산출해서 공급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킴

○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도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 이원화 되어 있는데 관련법률과 도입정원 결정방식의 이원화,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져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

❑ 외국인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할 제도마련 필요

○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들의 유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이민 선진국의 사례처럼 체계화된 법률과 컨터롤타워가 필요한데 가칭 「이민법」을 만들고,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 관련정책을 이민행정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정부조직 필요

○ 어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구유입의 일환으로 외국인 어촌이민정책이 필요하며 법 제정이나 기관 설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외국인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필요

- 이민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참조하고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 시행한다면,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도와 근속 기준 등을 충족하면 체류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물 수 있게 해야함. 쿼터만 늘릴 게 아니라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기준을 낮춰 많은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

○ 외국인선원 도입정원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정원 최종 결정(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

○ 불법체류자 및 불법체류 고용업체에 대한 법무부에서 강력 단속하고 외국인선원 무단 이탈이 선주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1년간 신고 인원 수 만큼 고용불가 불이익 처분 개선 필요

○ 외국인선원 평가를 통해 불성실자는 체류기간 감축(조기귀국 조치), 성실근로자는 영주권(10년, 20년, 영구 등) 부여 등 새로운 이민정책 도입 필요

○ 계절근로자(E-8비자/5개월)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과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 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농협)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9.8농림부발표)

- 업무대행을 후계인력단체에도 위탁한다면 인력의 수요와 공급 유연성 확보가 가능

토론문3

최영일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센터장

1. 지방자치법상 이주민의 주민권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수용성 부족

- 이주민들은 결국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함. 지역에 이주민 밀집지역의 증가와 더불어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민지원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노숙자 발생, 이주배경 아동들의 증가, 주거 문제, 건강권 문제, 인권의 문제, 긴급지원비 수요, 다정체성에 따른 갈등, 팬데믹 상황 발생 등. 읍면동 단위로 가면 인구 불균형,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로 더욱 심화됨.

-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 영주권자들 정도의 범주에서 사회보장제도에 일부 수용될 뿐 그 외 이주민들은 배제되거나 경쟁에서 뒷순위로 밀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예를 들면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의 돌봄과 교육지원에 있어서 배제되거나 서비스 경쟁에서 밀려남.

- 보육비 지원의 경우 안산, 부천 등 경기도 내 몇 개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지원되고 있으나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동포 자녀들을 비롯해 인도적체류자, 거주 및 숙련노동자 E-7-4 비자 자녀들 역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보육과 유치원 교육받는 상황임. 특히 귀화 비율이 높은 동포 자녀들 역시 배제됨. 장차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길 기대하면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등원시키는 상황임.

- 이에 행안부의 적극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주민권 수용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청됨.

2. 이주민 밀집지역의 증가에 따른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에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증가

- 그러나 이주민 대부분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방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재정착난민제도, 특별기여자 정착 등의 정부정책은 진행됨.

- 결국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선행될 때 지방정부 차원의 유효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수행이 가능함.

3. 정부의 이주민 대상 정책에 있어 일관성과 원칙의 결여

- 미등록 아동의 경우 학교 교육에 수용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 지원, 가정폭력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조치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작 그러한 가정폭력이나 돌봄 사각지대 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서비스에서는 배제됨.

- 정동재박사의 발제문에서도 밝혔듯 난민인정자들의 사회복지보장제도 내 예외적 수용과 모순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서는 배제됨(국민에 한함). 이 역시 예외적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배제됨.

- 이처럼 동일 중앙부처 내에서도 아동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이 없이 수용과 배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모순적인 상황임. 데이터에 근거한 일관된 원칙과 목표에 따른 정책 수립이 요청됨.

4. 부처 간 칸막이와 경쟁은 지역 차원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남.

- 단적인 예로 몇 년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논의 중 여가부의 반대에 좌초됨. 여가부 가족센터의 사업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사업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경기도 내 대부분의 이주민은 가족센터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의견으로 보임.

- 김포시의 경우 2022년 9월 현재 약 23,000여 명의 등록체류자 및 거소신고자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자 관련 통계는 2,000여 명임. 나머지 2만여 이주민들 즉 동포, 거주비자, 숙련기술자, 인도적체류자 등의 가족은 배제되기에 이들의 사회통합, 인권지원, 건강권 지원, 언어장벽의 해소 등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됨. 중복을 피하고 동시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이민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요청됨.

5. 발제자의 사회성원권 형성과 관련하여 비정규 체류 이주민과 함께 고려해야 할 장기체류자들(인도적 체류자)의 사회성원권 적용 시급

- 2011년 경 입국한 시리아 난민들의 경우 대부분 인도적체류자로 10년 이상 체류 중임. 이후로도 몇 년을 더 체류해야 시리아 내 정황이 귀환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장기체류 과정에서 중혼 등 사회적 문제들이 발견됨. 그러나 인도적체류자(G1-6)의 비자 특성상 비자 변경의 제한, 사회복지제도의 수용 불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기획이 어려운 상황임.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해도 장애인 등록이 불가함. 가족결합권 역시 이미 입국한 이들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음. 이에 정규 체류 상황임에도 적용되지 않은 사회성원권 형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 생각함.

- 이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5년 이상 근무하고 취득할 수 있는 숙련노동자(E-7-4)들 역시 여전히 사업주의 결정에 예속된 상태로 체류 중임. 물론 거주 비자인 F2로의 변경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이들의 국내 3D 업종 근무를 통한 기여도 등을 볼 때 사회성원권 차원의 고려가 요청됨.

6. 체류권의 부여와 더불어 삶의 질을 고려한 이민정책

- 예로 E-7-4의 경우 숙련기술자로서 가족 결합권을 부여받음. 그러나 정착 자녀의 보육과 교육비용의 부담 등으로 가족 결합권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이산가족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음.

- E-9 노동자가 최소 5년 이상 근무 후 점수제에 따라 얻게 되는 가족 결합권은 인권적, 윤리적 고려인 바 삶의 질에 중요한 권리임. 그러나 정작 누릴 수 없는 권리로 전락함. 가족 결합권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국내 노동시장의 중소기업에서 필수 인력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현실적 정책이 요청됨.

- 이러한 정책은 시급 수준의 점수제 반영이나 배우자의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의 유연한 적용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가계 수입 증대 혹은 아동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수반될 때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는 자립가능성을 높이며 동시에 성공적인 정착에 따라 송금 대신 국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기여 결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형성 가능.

토론문4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1. 발제문에 대한 논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 난민 행정의 현안과 개선과제(정동재 박사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찬동함[1], 이민행정과 이민윤리의 간극 줄이기(한준성 박사님)의 발표에도 적극적으로 공감[2]

2. 한국정부의 이민정책(난민정책 포함)에 관한 정책결정자의 태도와 한계

반세기 동안의 출입국 외국인정책('외국인을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보고 차별하되, 일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여 영주하게 하고 단순노무 담당하는 사람은 단기순환시켜 내보내는 것)과 이민정책(외국인을 한국사회에 동등한 구성원으로 대우하고 차별이 없도록 하며 한국에 거주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조건을 갖추어 영주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름

종전 정책의 한계가 객관적 현실에 충돌하여 노정[①실제로 비국적 이민자의 수가 증가한 사정, ②한국사회가 이민자들의 비정규노동과 이에 관한 착취에 기대고 있는 현실, ③한국의 제고된 위상과 이주목적국가화, ④한국이 이주민들의 도착 국가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규모로 이주민이 해외로 이주하는 국가이기도 한 사정, ⑤이제는 이민이냐 아니냐 수준이 아니라 이미 한국사회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성원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통합을 모색해야하는 수준에 온 사정]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민'관련 문제는 부정적 여론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하여 늦춰왔다가, 최근 인구감소와 성장 동력 감소에 대한 문제에 관한 급박한 대안으로서 논의가 시작되어 마찬가지로

1) - 외국인/이민자 개념화의 부재
- 주민등록법상 주민에서 배제되는 문제
- 전문인력, 결혼이민자, 이주아동 vs 비숙력/비전문 외국인노동자와 난민, 이주아동(다문화가족 자녀 제외)에 관한 문제 : 난민에 관한 상징적지지/배제에 관한 평가 적절
- 한국어 교육, 일자리/취업, 자녀 양육 교육 문제에 관한 지원
- 국익과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주민성을 인정하고 통합/공전의 대상으로 설정할 것
- 환영받지 못하는(Unwelcoming) 외국인 집단에 대한 시각 교정 필요성

2) - 정부의 '불법화' 대응에 나타난 '안전 중심' '법과 질서' 중심 협소화에 대한 경계
- 체류안정화 조치를 '사회적 성원권'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방식에 공감
- 캐런스의 4가지 반박 : 소위 '전권법리에 기초한 국가주권론', '적법 외국인에 대한 불공정', '위법에 대한 보상론', '내국민보호와 이민자 보호의 양자택일론'의 오해에 대한 반박은 전통적 출입국 당국의 시각에 관한 선명한 비판이라고 생각함

‘유용성’ 담론으로 이주민이 주체가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그대로 유지

3. 인권기반한 큰 과제 제안 - 출입국관리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고 이걸 전제로 한 기관으로서 조직구조 개편, 정착과 통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객체의 활용’이 아닌 ‘주체의 성원권’ 인정

첫째 핵심은 이민정책 기본계획이 있어야 함. 현재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는 사실상 외국인을 어떻게 환영하여 한국사회에 도착하도록 할지, 누구를 얼마동안 어떻게 거주하게 하고, 얼마나 한국사회에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함. 한국에 영주하고 거주하려는 것을 ‘촉진’해서 일정한 수에 도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있어야 함.

둘째 핵심은 이민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되, 적극적인 설명의 책임을 당국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나갈 필요가 있음. 소위 소수자의 지위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한국의 맥락에서는 예멘 난민에 관한 ‘위험론’,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관한 ‘기여론’을 근거로 혐오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체로 정부가 기능했음. 이에 관해 자성한 후 ‘선한 이주민’, ‘유용한 이주민’론이 아닌 ‘한국사회의 성원이자 주체인 이주민’에 관하여 당국이 직접 설명과 이해를 책임지고 해나갈 필요가 있음. 적극적으로 설명과 설득을 해나가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향후 한국사회의 분배의 불평등과 노동권의 문제가 이주민, 난민에 대한 혐오로 퍼져나가는 것을 용인하는 모양이 될 수 있음.

세 번째 핵심은 ‘고용허가제’의 폐지 및 노동허가제로서의 전환을 통해 비숙련 노동자라 하더라도 4년10개월만 있고 돌아가게 했던 이주노동자들 역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한국에 영주하고, 가족과 함께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해야함, 이 이야기를 회피하고 단지 ‘학생, 전문직 등 우수한 인재만 받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임.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제도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서 불법체류를 오히려 감수하는 것이 고용주의 갑질에서도 벗어나고, 임금도 더 높고, 인권도 보장받는 기이한 현실이 되고, 이에 제도가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않는데, 가끔 출입국공무원이 자의적인 단속 시도로 사고가 나는 일들이 반복되는 현실임. 이들의 정주 기회를 주고, 자긍심 있는 한국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환영하고,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하고 설령 인구문제에 관한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우파적 시각에서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포션을 논외로 돌리고서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임.

네 번째 핵심은 사회통합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 - 영주하는 외국인들을 차별받지 않고 한국사회 구성원이자 주민으로 살게 하는 것 -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동시에 ‘차별금지법’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함. ‘외국인을 이민으로 환영하는데 하지만 국민과 달리 차별할 거야. 너희는 영원한 2등 시민이야’라고 하는 한국사회는 성립할 수 없고, ‘우리 모두 함께 한국사회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라는 동력을 만들어야

이민정책이 성공함.

다섯 번째 핵심은 '계획할 수 없는 대상'들인 인권침해 피해자들인 외국인에 대한 전향적 정책임. 난민, 인신매매피해자, 미등록이주아동이 그 경우에 해당. 세 번째 카테고리는 비록 한시적 대책이긴 하나 일부 전향적 대책이 마련되었고, 인신매매 피해자는 관련법이 마련되었으나 사실 출입국 관료들의 벽에 부딪히고 있음. 난민 정책의 경우 오히려 이미 지나치게 협소했던 한국의 난민정책을 더 협소하게 만드는 정부입법 난민법 개정안이 예멘 난민 추방 여론의 여파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법임. 난민과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은 출입국공무원들의 고압적 하대와 인권침해, 반말, 욕설 등의 모멸감, 분명히 난민인데도 전문가가 아닌 출입국공무원의 자의적 결정으로 추방하고, 쫓겨나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것에 치를 떨면서 한국에 분노하고 있음.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나 구금, 구타같은 것도 마찬가지임.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 이민정책을 결코 말할 수 없음(제도적 개선 방안은 사실 수없이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적 의지만 없었을 뿐임) 일반적인 이민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피난을 오게 된 난민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등록 상태로 태어난 아동들의 경우 이들을 어떻게 환영하고 인권적 보장을 받으며 한국사회에 안에 녹아들게 할 것인가가 이민정책의 중요한 틀로 되어야 하고, 이들은 '첫째 핵심'인 계획에 녹아들지는 않지만, 정책적 방향으로 이런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난민이나 미등록이주아동은 차별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

토론문5

이일호 칼빈대학교 교수

먼저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2차 세미나 주제 『**국익과 인권의 조화**』 발제를 해주신 두 분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이민정책은 국가가 자국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출입국관리, 체류관리, 사회통합, 국적관리 등을 다루는 종합정책입니다(설동훈, 2016). 한국의 총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가 긴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저출산현상으로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급속한 인구고령화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조정 정책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1차 세미나에서도 거론이 되기도 했지만, 요점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성을 지키려면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국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문은 있으나 자물쇠가 없다면 철벽 수비의 성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토론자는 외국에서 12년을 살아본 경험자로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국익과 인구정책을 간과하는 인권 이상주의에 초점을 두는 보여주기식 이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이민청 설립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반이 되는 인구증가와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은 더 이상 미루거나 멈출 수 없는 국정 어젠더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국익 우선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국가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봉건주의에서 일제 식민, 근대국가의 역사는 74년인 만큼 국가경영 노하우가 빈약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는 국내 노동자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최장 체류 기간 3년에서 4년 10개월, 9년 8개월까지 연장되는 과정에 빗장이 많이 허술하게 무너진 면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국익 우선 보다는 사익에 치중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10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외국 유학생 제도

상당수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 재정과 학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

적을 두고 실제는 노동자로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현상을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

3. 국제결혼(통혼)

1990년 이후 증가한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이주·정착하는 이민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에게 임시 영주비자 5년을 주고 5년 후에도 부부가 계속 살고 있으면 시민권(영주권)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국제결혼 인구의 증가로 문화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종간 통혼이 많아질수록 동화주의(melting pot, salad bowl)로 흐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엄격한 결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이중국적

이스라엘의 경우 이중국적 허용 취지는 이민장려 및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참여 증진에 있습니다. 병역의무는 이중국적과 별개로 부과됩니다. 모든 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이중국적 허용은 혜택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측면에서 보완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이중국적 전면 허용하던 캐나다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외국인 우수 인재에 대한 이중국적 용인도 동일선상에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에서 10여년 영국에서 2년을 살아본 경험자로서 덧붙이겠습니다.

토론자는 일찍이 이스라엘 귀환법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귀환법을 만들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류의 바람에 편승하여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한국을 선호하는 세계 젊은이들의 한국 귀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 7월 5일 통과된 귀환법(Law of Return)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국적을 취득하도록 장려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귀환자(Oleh)는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내국인과 동등한 시민권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습니다. 반면에 올레 신분증을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첫째,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해를 미치는 활동에 가담한 경우, 둘째, 공주 보건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셋째, 공공안녕에 해를 끼칠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어머니에게 태어났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유대인으로 정의했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과 더불어 비유대인 자녀들과 손자들, 배우자들과 자녀들, 손자들의 비유대인 배우자들까지 시민권을 부여받도록 개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 최악의 공산국가들과 국경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에 입각한 인권을 근간으로 하는 이민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을 지지하거나 이스라엘 반대단체나 기구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이스라엘 입국이 금지됩니

다. 이또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민으로 노동력 공급이 증가되어 국내산업의 인력난 해소, 자본수익률 제고, 국내총생산 증가가 발생합니다.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순이민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1%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 특정 기간(1985~1989) 동안 미국 이민자는 내국인 평균임금의 15~25%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은 이론상 좋게 보이지만, "이민자는 정확한 미래전망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이삼식, 2013). 이민을 중심으로 국가를 세운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의 정책을 참고하되 철학과 정책의 결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을 우선하는 설계는 위험합니다. 성문 수호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마취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류사회의 등뼈를 압박하고 주변인(marginal people)만을 보호, 배려하는 인권 우선 정책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동화 없는 이민은 침략이다(Immigration without Assimilation is an invasion).

만에 하나라도 이민자들의 눈에 브로커들의 눈에 대한민국의 이민관리 행정과 법이 허점 투성이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사뭇 궁금합니다. 국익과 안보가 우선이지 인권이 우선시 되는 이민정책은 성문의 자물쇠가 없는 모양만 견고한 쉽게 무너질 성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귀환법, 5710-1950[유대력-1950년]

모든 유대인들은 올레로(이민)서 이 나라에 올 권리가 있다.

알리야는 올레의 비자에 따라야 한다.

올레의 비자는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모든 유대인에게 주어질 것이나 이민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신청자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 한에서다.

유대인을 상대로 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는 공중 보건이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에 온 이후 이스라엘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올레 증서를 받을 수 있다.

제2조 (b)에 명시된 제한은 올레인의 인증서 수여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도착한 후 발병한 질병의 경우 공중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나라에 이민 온 모든 유대 사람과, 이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유대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나 후에나, 이 법에 따라 올레로 이 나라에 온

사람으로 간주 될 것이다.
이민부 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담당하며, 그러한 시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18세까지의 미성년자에게 올레의 비자와 올레의 증명서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귀환법, 5714-1955: 수정헌법 제1조

귀환법 제2조 (b)항, 5710-1950: 제2항 말미의 마침표는 세미콜론으로 대체하고, 그 후 "또는"이라는 단어를 삽입한다.

제2항 뒤에 다음 항을 삽입한다.
(3)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복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이민부 장관"이라는 문구는 "내무부 장관"이라는 문구로 대체한다.

귀환법, 5730-1970: 수정헌법 제2조

1. 귀환법, 5710-1950에서, 제4조 뒤에 다음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권리:
4A.
a. 본 법에 따른 유대인의 권리와 국적법에 따른 올레인의 권리,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올레인의 권리는 유대인의 자녀와 손자, 유대인의 배우자, 유대인의 자녀의 배우자, 유대인의 손자의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유대인이었으나 종교를 바꾼 경우 제외된다.
b. (a)항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유대인이 아직 살아 있는지 여부와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c. 본 법률 또는 (a)항에 언급된 제정법에 의해 또는 (a)항에 따라 유대인 또는 올레인과 관련하여 규정된 제한 및 조건은 (a)항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정의:
4B. 이 법의 목적상, "유대인"이란 유대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다른 종교의 일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귀환법 제5710조 - 1950조 제5항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4A조 및 제4B조의 목적을 위한 규정은 크네셋의 헌법, 입법 및 사법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인구등록법, 5725-1965에서, 제3조 뒤에 다음 절이 삽입되어야 한다.

3A.

본법의 기재사항 또는 등록 공문서에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었을 경우, 최고 등록 위원 (Chief registration officer)이 만족할 만큼 해당 통지, 기재사항 또는 문서가 논쟁이 되지 않았거나 관할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민족적 소속이나 종교를 사유로 유대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본 법률과 그에 따른 등록 또는 문서의 목적상, "유대인"은 5710-1950년 귀환법 제4B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조항은 발효되기 전에 시행된 등록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

2차 국익과 인권의 조화

주최·주관 | 조정훈 의원실 법무부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공동주최 | 기동민 의원실, 김형동 의원실, 류호정 의원실, 유상범 의원실, 윤재갑 의원실, 이명수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